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선초기 보편적 즉위의례의 추구 - 嗣位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李賢旭

【 초록 】

조선초기 太宗과 世宗代에는 儀禮, 官制 등 각종 제도의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제도 정비는 고려의 구제도들을 일신하고 조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明의 諸侯國 조선의 格에 합당한 제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제도정비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국왕의 卽位儀禮인 嗣位 역시 포함되었고, 이것은 세종대 후반에 들어서 완성되었다. 사위 역시 조선초기 제도 정비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사실들은 冕服, 傳位遺教, 大寶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새 국왕은 명 황제가 내려준 면복을 입고 즉위하였다. 즉위식에서 입을 禮服을 선택함에 있어 면복과 喪服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古制와 時王之制가 동시에 지지하는 면복을 입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면복은古今에 통용되는 형식으로서 즉위식에 맞는 예복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명의 제후국이라는 위상에 맞도록 명에서 내려준 면복을 입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당시의 질서에 부합하는 의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위유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大行王之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 국왕 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새 국왕이 대행왕의 전위유교를 받는 과정은 古典에 기록되어 있는 의례로서, 당대 조선인들은 이 절차의 실행을 이상적 제도의 구현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대보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儀物로서, 이는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를 통해 공유된 인식이다. 조선은 명에서 받은 '朝鮮國王之印'을 대보라 부르며 그것이 조선 국왕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만든 국왕의 다른 印章들을 대보를 모델로 하여 구조함으로써 제후국 分義 역시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고제와 시왕지제를 기준으로 하여 완성된 조선의 嗣位禮를 통해서 太祖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天命이 계승되었고, 동시에 면복과 전위유교,

대보는 조선의 천명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제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천명을 받아 세워진 나라였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것이 고제와 시왕지제였다. 제후국 분의도 경우에 따라 타당한 제도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세종대에 제정된 사위례는 보편적 문물제도의 구현이라는 조선초기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目次

서론	1
1. 『世宗實錄』 五禮 嗣位 검토	6
2. 제후국의 繼統 - 冕服	12
3. 冊命禮 구현을 통한 후계자 지명 - 傳位遺教	19
4. 조선국왕의 권위와 정당성 - 大寶	27
5. 사위례를 통한 조선의 天命 전수	36
결론 - 外藩國 조선의 보편 즉위의례, 嗣位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1

서론

조선초기 太宗·世宗대에 걸쳐 활발하게 추진된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는 건국 이래 襲用해오던 고려의 舊制度들을 일신하고 새로운 조선의 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五禮體制를 根幹으로 한 國家禮制 역시 문물 정비의 일환으로 詳定이 추진되어 태종대에는 祀典(吉禮)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고, 세종대에는 嘉·賓·軍·凶禮가 정비되면서 그 내용이 『世宗實錄』 五禮로 정리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 시기 예제 정비의 과정과 사실관계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오례체제 = 왕권강화’ 또는 ‘王權 對 臣權’이라는 도식적인 구도를 취했다.¹⁾ 오례체제와 왕권강화를 연결시키는 시각에 의하면 조선초기 태종, 세종대를 거치면서 정비된 오례체제는 이들의 강력한 왕권이 투영된 예제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적 구도에서 바라본 연구에 의하면 成宗代 士林派의 성장이 이 시기 예제 정비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한다. 사림파의 정치적 지향에 의해 왕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고, 이 상황이 『國朝五禮儀』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왕권강화와는 결을 달리하면서 조선초기 예제 연구 과정에서의 古制와 時王之制간의 관계를 언급한 연구들도 제출되었다.²⁾ 이들 연구는 세종대의 集賢殿 설치와 古制 연구를 통해 기왕에 수용한 時王之制를 비판하면서 예제가 정비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태종대 시왕지제를 받아들이면서 정리한 예제를 세종대의 고제 연구를 통해 극복·정비했던 것으로 이해했다. 조선초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빈번하게 云謂되었던 고제와 시왕지제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1) 이범직, 1989 「국조오례의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22; 1990 「조선전기의 오례와 가례」 『한국사연구』 71; 이완재, 김송희, 1998 「조선초기의 유교적 국가의례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사학』 10; 임민혁, 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2) 한형주, 2002 「15세기 사전체제의 성립과 그 추이」 『역사교육』 89; 김혜영, 2010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제시한 고제의 연구를 통한 시왕지제의 극복이라는 명제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모든 시왕지제가 극복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고제와 시왕지제가 길항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고제와 시왕지제는 필요에 따라 加減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양자가 모두 중시되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고제와 시왕지제의 비중이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선초기 예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의례 전체, 즉 『세종실록』 오례 혹은 『국조오례의』 전체를 대상으로 그 성립과정에 관심을 두어 이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거나 목차 대조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의례의 성립과정을 정리하고, 『通典』, 『文獻通考』와 같은 참고문헌들과의 목차 대조를 통해 그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개별 儀註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목차를 중심으로 한 개략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고제를 통한 시왕지제의 극복이라는 단순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기왕의 예제 연구들이 주로 吉禮와 嘉禮의 일부에 관심을 집중했던 반면, 凶禮, 특히 嗣位儀禮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김지영에 의해 제출되었다.³⁾ 이 연구는 有德者에 의한 왕위계승 표방과 이를 통한 성리학적 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당대인들의 지향을 제시하였으며, 예제 연구 대상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유덕자에 의한 왕위승계 표방에 관심을 집중하였기에 당대인들의 또다른 문제의식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즉 유덕자에 의한 왕위 승계라는 당위에 대한 인식이 군주의 즉위의례에 반영됨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의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당위적 이념을 투영한 의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대인들은 조선의 지향으로서 보편 문물, 명의 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던 당대의 시대성은 이 고민의 과정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위 연구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고

3) 김지영, 2012 「조선시대 사위의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1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이 고제와 시왕지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고제 연구를 통해 시왕지제를 극복하였다는 단순한 결론은 당대 예제 정비 실상의 일부에만 타당한 명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드러낸 연구와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고제와 시왕지제에 주목하여 당대의 맥락에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제출되었다. 문중양은 세종대 雅樂정비 과정에서의 논의를 분석하여 인조 기장의 사용을 통해 고제를 일부 변형하면서 동시에 시왕지제와의 일치를 추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⁴⁾ 최종석은 조선초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주목하였던 고제와 시왕지제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추상적 차원의 시왕지제는 보편문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구체로서의 시왕지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또는 배제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당대의 맥락을 잘 드러내고 있다.⁵⁾ 이들 연구들은 고제와 시왕지제가 공히 중요한 典據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추종의 대상이 아니었던 당대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고제와 시왕지제를 참고대상으로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초기의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을 구성하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諸侯國 分義였다. 조선은 개국 당시부터 字小事大를 원칙으로 明의 諸侯國을 자처하고 있었고, 이 위치는 태종이 ‘朝鮮國王’으로 冊封을 받은 이후로 명이 멸망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된 사실이었다. 명의 제후국이라는 조선의 위상은 이 시기 예제 정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조선은 명의 제후국이었기에 일부 의례에서 天子의 격에 맞춰진 고제와 시왕지제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이러한 제후국 분의와 관련하여서도 최근 주목할 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종석은 元 간섭기 이후 변화된 국가

위상, 즉 제후국 조선(고려)이라는 위상이 국내적으로도 관철되기 시작하는 변화를 朝賀儀禮에서 국왕의 更衣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⁶⁾ 또 다른 연구에서는 聲敎自由와 관련된 조선전기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제후국 조선의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일단면을 보여주었다.⁷⁾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조선초기 예제 정비에서 당국자들의 문제의식을 구성하고 있었던 중요한 논점들, 즉 고제, 시왕지제 그리고 제후국 분의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에 대해 한 단계 진전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과 결을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 시기 예제 정비의 지향점을 이야기 한 것이 바로 중화보편의 추구이다. 앞서 제시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에서도 중화보편의 추구라는 논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訓民正音 創製의 궁극적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아시아의 보편언어·문자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 정다함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⁸⁾ 전술한 최종석의 연구에서도 성교자유의 맥락이 제후국의 분의를 견지한 채 조선인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중화의 문물을 조선에서 구현하려는 목표 아래에서 고려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⁹⁾

이상과 같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조선초기 제도 정비와 관련한 이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과거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는 認容하되 왕권강화나 왕권과 신권의 대립적 구도, 혹은 성리학적 사회 건설의 지향이라는 통시대적인 구도를 넘어 조선초기의 역사성에 접근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조선초기에 확립된 국왕의 즉위의례, 즉 사위례의 설계는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인 보편 문물의 구현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서의 고제와 시왕지제, 고려 사항으로서 제후국 분의라는 요소들이 모두 녹아있는 지점이다. 당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즉위의례로서 사위례를 설계하면서 고제와 시왕지제를 참고하고 있었다. 새롭게 만들어

4) 문중양, 2006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5) 최종석, 2010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6) 최종석, 2009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7)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한국사연구』 162
8) 정다함, 2009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9) 최종석, 2013, 앞의 논문

가는 조선의 문물이 보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제와 시왕지제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위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제와 시왕지제는 조선초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모두 중시되었고, 양자가 밀접한 관련이나 우열관계에 놓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주 상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의는 왕권강화나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는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다. 논자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보편의 기준이 달랐는데, 이 균열축은 국왕과 신료의 사이를 가로지르지 않는다. 각자의 상이한 기준을 수렴한 보편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의주를 설계함에 있어 고제와 시왕지제가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시기 예제 정비에서 고제와 시왕지제를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답습하지 않았고 명의 제후인 조선국왕의 위상을 고려하여 의례를 설계하였다. 有德者인 국왕이 가진 권위나 권력이든, 그를 보좌하는 신료들의 정치력이든 그것들을 규정하는 조선의 위치, 즉 제후국 조선이라는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대인들의 의식의 근거에 깔려있는 제후국 인식을 배제한 의례 검토로는 사위례가 담고 있는 그들의 문제의식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고제와 시왕지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이 제후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제 정비에서 참고자료로서의 고제와 시왕지제, 고려사항으로서의 제후국 분의와 같은 논점들은 모두 개별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드러날 수 있다. 예제 전체의 목차비교나 사실관계의 연대기적 나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조선시대 사위례의 형태를 제시한 『세종실록』 오례 사위의 儀物과 그와 관련된 절차를 대상으로 그것들이 기획된 당대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보편 문물의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안에 따라 제후국 분의를 준수하고자 하였던 당대인들의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고하였던 고제와 시왕지제의 역할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1. 『世宗實錄』 五禮 嗣位 검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군주는 최고 통치자이자 정치의 중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국왕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의 수명이 다하면 비워진 국왕의 자리를 후계자가 승계하게 된다. 권력자의 교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이 과정은 부정기적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새 군주는 정당한 후계자로서 반드시 즉위의례를 거쳐야 했다. 이것은 중국 역대 왕조와 조선 모두의 공통점이다. 즉위의례를 통해 새 군주가 정당하게 位를 이었으며 先君들이 쌓아온 권위를 함께함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군주의 즉위의례가 항상 존재하였고 그에 대한 의주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 의주는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남아 있더라도 사후적인 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國恤은 臣子が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황제의 崩御를 전제로 한 새 황제의 즉위의례를 상세하게 남기지 않았다. 오례체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大唐開元禮』에도 國喪의 과정과 의주는 남아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유지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大明會典』을 편찬하면서 太祖와 仁宗, 世宗의 登極儀를 기록한 것은 황제 즉위의례 의주의 사후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앞선 전통에서 다소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미 있었던 先代 황제의 붕어와 그 후계 황제의 즉위를 사후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즉위의례 의주의 사전적 규정을 기피하는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역시 국왕의 즉위 의주가 상세하게 전하지 않는다. 『高麗史』에 단편적인 기사들이 전하지만, 이 기록들은 왕위의 전수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기록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략하다. 『高麗史』 「禮志」에도 상세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도 중국 역대 왕조와 같이 국왕의 즉위의례 의주를 사전에 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의 국왕 즉위의례인 사위례는 중국 역대 왕조와 고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즉위의례의 의주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명회전』의 등극의가 16세기 초에 들어서야 과거의 의주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임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15세기 전반에 이미 즉위의례의 의주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許綱가 ‘凶事は 미리 알 수 없어 차마 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껏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¹⁰⁾, 조선은 흥례를 臣子가 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딛고 사위례 의주를 詳定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위례의 명칭에 있어서도 『대명회전』 등극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대명회전』 등극의는 ‘등극’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새 황제가 至尊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통치자가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父皇으로부터 皇位를 물려받는다는 측면보다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에서 선택한 ‘嗣位’라는 표현은 父王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嗣’라는 문자는 원래 諸侯가 나라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제후의 요소는 점차 축소되고 승계의 측면이 전면에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¹¹⁾ 명 황제들의 등극의주에서도 ‘황위를 이었다’는 표현에 ‘嗣’를 쓴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완전히 승계의 측면을 주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비교하여 즉위의례를 사전에 규정하였다는 점보다 더 큰 차이점은 명의 제후국이라는 조선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儀註의 相異性이다. 중국 역대 왕조와 고려에서는 모두 천자를 칭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어디까지나 명의 親王에 준하는 제후국이었다. 군주의 즉위라는 보편적인 의례가 제후국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전통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조선의 사위의례이지만 새 군주의 즉위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역대의

10) 『世宗實錄』 卷16, 4년 5월 28일(甲申) ‘凶禮不預 不忍啓聞 因循未成’

11) 『說文解字』 卷2下 ‘嗣 諸侯嗣國也 從册從口 聲 徐鍇曰 册必於廟史讀其册 故從口 祥吏切’

즉위의례와 동일하다. 즉 의례를 통해 정당하게 권력을 승계하여 새로운 군주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즉위의례의 기본적 속성을 사위례도 갖추고 있다. 권력의 승계와 그 정당성을 상징할 儀物이 동원되는 것도 조선의 사위례와 앞선 시기의 즉위례가 동일하다. 결국 조선의 사위례는 군주의 즉위의례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과 명의 제후국 조선이라는 위상에서 기인하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사위례가 권력의 승계와 정당성의 顯示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상징할 가시적인 의물이 필요하다. 사위례에 사용된 의물들은 즉위의례에 대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인식과 제후국의 위치가 맞물린 상황에서 내린 조선의 결정을 드러낼 것이다. 天命으로 표현되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통치권 승계가 제후국 조선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선 국왕 즉위의례의 원형을 제시한 『世宗實錄』 五禮 嗣位の 규정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위례에서 군주의 즉위에 관한 보편성과 제후국 조선의 위상이 드러나는 지점들을 확인한다.

【자료 1】¹²⁾

1. 成服 이후 사위 의례 준비 과정. 幄次, 御座 등을 설치하고 傳位遺敎와 大寶를 陳設한다.¹³⁾
2. 禮曹判書가 王世子에게 冕服을 입기를 청하면 왕세자는 면복으로 갈아입는다.¹⁴⁾
3. 嗣王이 들어가 大行王의 殯殿에서 향을 올리고 拜禮를 행한다.¹⁵⁾

12) 왕세자(국왕)와 신료, 집사관과 諸衛 병사들의 위치와 같이 논지 전개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였다.

13)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掖庭署設御座於幄次內, 南向. (중략) 都承旨陳遺敎函于櫝宮南, 近東. 尙瑞官陳大寶于其南’

14)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禮曹判書進當廬次前俯伏跪, 贊請具冕服, 尙衣院官以冕服奉進, 王世子釋裘服具冕服’

15)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判通禮引嗣王, 由東門入就褥位北向立. 判通禮贊請跪, 嗣王跪, 宗親及百官同(通贊亦唱). 司香二人(內直別監公服) 進香案前北向跪, 三上香訖, 俯伏興退. 判通禮贊請俯伏興平身, 嗣王俯伏興平身, 宗親及百官同(通贊亦唱). 典儀曰四拜. 判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 嗣王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4. 領議政이 전위유교를, 左議政이 대보를 사왕에게 전한다.¹⁶⁾
5. 國王이 대행왕에게 배례를 행한 후, 전위유교, 대보, 儀仗과 함께 악차로 돌아간다.¹⁷⁾
6. 勤政門 앞에 3품 이하 관원들이 班列하면 국왕이 어좌에 나아가고 2품 이상 신료들이 들어와 국왕에게 배례하고 叩頭禮, 山呼를 행한다.¹⁸⁾

이상이 『世宗實錄』 五禮 嗣位條 규정에 따른 사위의례 전체의 순서이다. 일부 세부규정에서 變改가 나타나긴 하지만¹⁹⁾ 성종대 초반에 만들어진 『國朝五禮儀』 「凶禮」의 사위도 큰 변화없이 위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國喪 6일차에 왕세자 이하 종친, 백관 및 內外命婦가 상복을 입는 成服이 진행된다. 왕세자가 斬衰三年服을 입고, 그 이하 각기 규정에 맞게 모두 상복을 입는 절차가 성복이다. 이 성복을 마친 직후 사위가 준비된다. 典設司에서 대행왕의 梓宮을 모신 殯殿 곁에 새 국왕이 잠시 쉬는 공간인

16)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領議政以遺教授嗣王, 嗣王受遺教覽訖, 以授近侍, 近侍傳捧, 退跪於後, 領議政降就本班. 左議政以大寶授嗣王, 嗣王受, 以授近侍, 近侍傳捧, 退跪於後, 左議政降就本班’

17)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判通禮啓請俯伏與平身, 殿下俯伏與平身, 宗親及百官同. 近侍各捧遺教及大寶, 以次先降立於褥位之東. 判通禮導殿下降就褥位, 典儀曰四拜. 判通禮啓請鞠躬四拜與平身, 殿下鞠躬四拜與平身, 宗親及百官同. 判通禮導殿下出東門, 近侍各捧遺教及大寶前行, 殿下入幄次即座. 近侍以遺教大寶, 授尙瑞院官. 忠義衛一人捧紅陽織, 二人捧青扇立於次前. 諸護衛之官 (都鎮撫一, 內禁衛節制使二, 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 佩雲劍中樞四, 捧甲上護軍設捧胄上護軍各一, 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 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 司僕官六)及司禁(二十人), 承旨(六人), 史官(二人)俱詣次前, 侍衛如式’

18) 『世宗實錄』 五禮凶禮 嗣位 ‘掖庭署設御座於勤政門當中, 南向, 設寶案於座前. (중략)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三品以下入就位. 判通禮詣次前俯伏跪, 啓請陞座, 殿下出次乘輿以出, 撤扇侍衛如常儀. 判通禮導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捧寶置於案, 撤扇侍衛如常儀. 諸護衛之官, 分列於御座之後及階下東西, 次承旨分詣階下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東西,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二品以上, 由東西偏門入就位, 典儀曰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與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與平身. 通贊唱跪搯笏三叩頭, 宗親及百官跪搯笏三叩頭. 通贊唱山呼, 宗親及百官拱手加額曰千歲. 唱山呼 曰千歲, 唱再山呼 曰千千歲’

19) 『國朝五禮儀』 「凶禮」 사위에서는 당시의 관제변경을 반영하여 의례 참여 衙門의 명칭 및 執事官의 職銜이 변경되었고 계엄에 동원되는 諸衛의 규정이 소략해졌으며 監察이 增置되었다. 그러나 의례에 사용되는 의물이나 절차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의 사위의례의 원형을 제시한 『世宗實錄』 五禮 嗣位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幄次를 설치하고, 掖庭署에서 그 안에 御座를 설치한다. 병조에서는 여러 衛의 군사들을 정돈하여 주위를 경계하고, 典儀 등의 집사관들이 종친 이하 백관들의 자리를 설치한다. 도승지는 전위유교를 담은 상자를 대행왕의 橫宮(梓宮) 앞에 설치하고, 尙瑞院에서는 그 앞에 대보를 두는데, 모두 탁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둔다. 준비가 끝나면 영의정과 좌의정이 빈전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백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대기한다. 이것이 자료 1-1의 과정이다.

다음으로 예조판서가 국상의 喪主人 왕세자가 머물고 있는 廬次 앞에서 왕세자에게 면복을 입기를 청한다. 예관의 啓請에 이어 상의원에서 면복을 올리면 왕세자는 면복을 입는다. 왕세자가 면복을 착용한 직후부터는 그 호칭이 嗣王으로 변화한다. 이상이 자료 1-2의 절차이다.

관통례는 면복을 입은 사왕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서 빈전 앞의 褥位로 간다. 사왕에게 꿇어앉기를 아뢰면 사왕 이하 백관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왕은 대행왕에게 세 번 향을 올린 후 엎드렸다가 일어난 후 四拜를 행한다.

대행왕에게 배례를 행한 후 빈전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의정과 좌의정이 전위유교와 대보를 든 탁자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각기 전위유교와 대보를 받들어 서쪽을 향하여 선다. 사왕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재궁을 향해 꿇어앉으면, 두 대신이 각기 전위유교와 대보를 사왕에게 바친다. 사왕은 전위유교를 받아 읽은 뒤 近侍에게 전하고, 대보를 받아 역시 근시에게 전한다. 전위유교와 대보를 받은 직후부터 사왕은 殿下로 불리기 시작한다. 전위유교와 대보를 받은 근시들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 옥위의 동쪽에 서면 새 국왕도 관통례의 인도를 따라 옥위로 돌아가서 대행왕에게 사배를 올린다. 국왕이 자료 1-1의 단계에서 설치한 악차에 들어가 어좌에 앉으면 전위유교와 대보를 尙瑞院으로 넘겨 보관하게 한다. 새 국왕이 자리한 악차의 앞에는 국왕의 儀仗인 紅陽織과 靑扇을 든 군사가 서고, 都鎮撫, 節制使, 護軍, 司禁 등의 호위관과 승지, 사관 등의 侍衛들도 악차 앞에서 侍衛한다. 여기까지가 자료 1-5까지의 절차이다.

마지막 단계는 새 국왕이 백관들로부터 즉위를 하례받는 受朝賀이다. 액정서는 근정문 가운데에 남향으로 어좌를 설치하고 軒懸을 전개하며, 協律郎과 雅樂司의 자리를 설치한다. 관사복은 왕이 타는 輿輦, 御馬를 대령하고, 병조에서는 병사를 지휘하여 殿庭에 도열시킨다. 집사관들이 자리잡으면 봉례량이 3품 이하의 종친과 관원들을 인도하여 각자의 반열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악차로 가서 국왕에게 어좌로 갈 것을 청하면 국왕은 악차를 나와 가마를 타고 간다. 국왕이 어좌에 도착하면 향을 피우고 상서원에서 대보를 어좌 앞 탁자에 둔다. 호위관, 승지, 史官 등이 각기 어좌의 뒤와 계단의 아래에 좌우로 벌여 서고, 繖扇 등도 평소와 같이 선다. 봉례량이 2품 이상의 종친과 대신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면 백관들이 새 국왕에게 사배를 올리고 고두례를 행한 후 山呼를 한다. 국왕이 여차로 돌아가서 면복을 벗고 衰服으로 갈아입고, 백관들도 물러나 朝服을 벗고 喪服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사위례는 끝난다.

이상이 사위의 절차로, 그 중 국왕의 권위 승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물로 면복과 전위유교, 그리고 대보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복을 착용함으로써 후계자의 칭호가 ‘王世子’에서 ‘嗣王’으로, 傳位遺教와 大寶의 인수를 통해 ‘嗣王’에서 국왕을 의미하는 ‘殿下’로 변화하고 있다. 유일한 조선의 지존인 국왕을 지칭하는 전하라는 호칭이 전위유교와 대보의 인수를 통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흉례」에 규정된 국훈 절차에서 전위유교와 대보를 인수한 새 국왕은 전하라고만 불린다. 특히 『국조오례의』 「흉례」 告訃請諡請承襲에서는 사위례를 기점으로 한 호칭 구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 한다.²⁰⁾ 면복의 착용을 통해 사왕으로 불리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면복은 또한 당대인들이 繼統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사위례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복임을 알 수 있다.²¹⁾

20) 『國朝五禮儀』 「凶禮」 告訃請諡請承襲 ‘前期告訃請諡表箋及議政府請承襲申呈撰進(議政府啓稟嗣王 令藝文館承文院製述書寫)’

21) 『文宗實錄』 卷2, 즉위년 6월 10일(임오) ‘臣等以謂即位之時 依周制御冕服者 所以重繼統也’

둘째, 전위유교와 대보는 대행왕의 빈전에서 최고관품의 대신들이 받들어 올리고, 새 국왕이 이를 직접 받도록 하고 있다. 사위례에 등장하는 호위관 및 侍臣, 繖扇 등은 수교 및 수보 절차 이후 새 국왕의 행차를 수행하며 그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위유교와 대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권위의 계승을 보이는 의물로서의 역할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위유교와 대보의 경우 특별히 대행왕의 재궁 앞에서 왕세자가 직접 인수하는 과정을 설정하였고, 그것들을 받들어 올리는 관원도 최고관품의 대신들로 규정하고 있다. 대보는 受朝賀 과정에서도 어좌의 앞에 설치한 탁자에 진설됨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국왕이 인수하는 의물들 가운데 면복과 전위유교, 그리고 대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의물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들이 의주에 규정된 이유를 확인한다. 즉, 조선이 사위례를 상정하면서 당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위의례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과 제후국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후국의 繼統 - 冕服

면복은 黃帝가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周에서는 6가지의 면복을 용처에 맞게 구분하여 이용하였고, 漢代에는 天子 9旒, 三公諸侯 7旒, 卿大夫 5旒라고 하며, 天地郊祀와 明堂祭祀에 착용하였다. 唐代에는 주의 제도를 따라 6가지 면복을 규정하였는데, 각기 大裘冕, 衮冕, 鷩冕, 毳冕, 繡冕, 玄冕으로 역시 용처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²²⁾

22) 『通典』 禮17 「君臣冠冕巾幘等制度」 ‘黃帝作冕, 垂旒, 目不邪視也. 充纈, 示不聽讒言也. 事見世本. 周制, 弁師掌王之五冕, 皆玄冕, 朱裏, 纒紐. 冕服有六而言五者, 大裘之冕蓋無旒, 不聯數也. … 此謂衮衣之冕十二旒, 則用玉二百八十八, 鷩冕纒九旒, 用玉二百一十六, 毳冕七旒, 用玉一百六十八, 繡冕五旒, 用玉一百二十, 玄冕三旒, 用玉七十二. 諸侯及孤卿大夫之冕, 各以其等爲之. 各以其等者, 纒玉如其命數. 冕則侯伯纒七就,’

明代에도 면복을 사용하고 있는데, 洪武年間(1368~1398)과 永樂年間(1403~1424)에 면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황제의 면복은 袞冕 한 종류만 남았고, 천지·종묘·사직·先農·正旦·冬至의 제사와 冊拜에 곤면을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홍무 16년(1383)과 26년(1393), 영락 3년(1405)에 면복의 規式이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영락 3년의 개정을 통해 玄衣黃裳이 玄衣纁裳으로, 玄表纁裏에서 玄表朱裏로, 衣裳 각6장에서 衣8裳4장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²³⁾ 황제가 착용하는 면복 규식의 개정에 따라 친왕의 면복 규식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였다.²⁴⁾

조선에서의 冕服은 受敎와 受寶에 앞서 사위의례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受朝賀를 마칠 때까지 입고 있는 국왕의 예복이다. 조선에서는 태종이 명 태종으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책봉받은 뒤에 면복을 賜與받았고, 이후로 조선의 국왕들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 면복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고려 恭愍王은 명 태조로부터 九章冕服을 賜與받았고 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태종이 면복을 받을 때까지는 명으로부터의 면복 사여가 없었다. 그렇기에 태종초까지 앞서 공민왕이 받은 면복을 보수하면서 이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用玉九十八, 子男纁五就, 用玉五十. 纁玉皆三采. 孤纁四就, 用玉三十二. 三命之卿纁三就, 用玉十八. 再命之大夫纁再就, 玉八. 纁玉皆朱綠. 禁令不得相僭踰. 秦滅禮學, 郊社服用, 皆以衿玄, 以從冕旒, 前後邃紕. … 後漢光武踐祚, 祀天地明堂, 皆冠旒冕. 孝明帝永平初, 詔有司採周官禮記尙書皋陶篇夏侯氏說, 冕皆廣七寸, 長尺二寸, 前圓後方, 朱綠裏, 玄上, 前垂四寸, 後垂三寸, 繫白玉珠爲十二旒, 綦色獨斷云九旒也. 以其綬采色爲組纓. 禮記曰玄冠朱組纓, 天子之冠也. 其旒珠, 用眞白玉. 三公諸侯七旒, 青玉珠. 卿大夫五旒, 黑玉珠. 皆有前無後, 各以其色綬爲組纓, 旁垂註纓. 助天子郊祀天地明堂則冠之 … 大唐依周禮, 制天子之六冕, 有大裘冕, 衮冕, 鷩冕, 毳冕, 繡冕, 玄冕.’

23)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帝冕服 ‘凡祭天地宗廟及正旦冬至聖節則服袞冕 祭社稷先農冊拜亦如之 洪武十六年定冕 前圓後方 玄表纁裏 前後十二旒 每旒五采玉十二珠 五采纁十有二就 … 袞玄衣黃裳十二章 日月星辰山龍華蟲六章織在衣 宗彝藻火粉米黼黻六章繡在裳 … 二十六年定袞冕十二章 … 冠上有覆 玄表朱裏 前後各有十二旒 … 袞玄衣纁裳 衣六章織日月星辰山龍華蟲 裳六章織宗彝藻火粉米黼黻 中單以素紗爲之 … 永樂三年定冕 冠十有二旒 冠以白紗爲之 … 玄表朱裏 前圓後方 … 袞服十有二章 玄衣八章 日月龍在肩 星辰山在背 火華蟲宗彝在袖 皆織 … 纁裳四章 織藻粉米黼黻 各二前三幅後四幅 (후략)’

24)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親王冠服 ‘洪武二十六年 定袞冕九章 冕五采玉珠九旒 … 青衣纁裳 衣五章 織山龍華蟲火宗彝 裳四章 織藻粉米黼黻 … 永樂三年定冕 冠玄表朱裏 前圓後方 … 袞服九章 青衣五章 龍在肩 山在背 火華蟲宗彝各袖皆織 … 纁裳四章 織藻粉米黼黻各二前三幅 (후략)’ 따라서 영락연간을 기점으로 고려와 조선에서 받은 면복은 세부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명 초기 공민왕의 고려국왕 책봉 이전에도 고려에서는 중국 왕조로부터 면복을 받고 있었다. 『高麗史』 「輿服志」에 의하면 이미 文宗代부터 거란으로부터 면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肅宗, 仁宗과 明宗代에도 각기 遼, 金으로부터 면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확실하게 면복으로 기록된 경우 외에도 冠服과 圭 등을 보내왔다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국왕의 즉위식에서 면복을 입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忠烈王과 忠宣王이 각각 黃袍와 赭袍를 입고 즉위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²⁷⁾ 요나 금으로부터 받은 면복을 즉위식에서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宋과 이전의 중원 왕조, 遼와 金 등의 왕조에 대하여 稱臣하고 冊封을 받는 제후의 명목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제후의 위상을 배제한 상태로 국왕이 유일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²⁸⁾ 그렇기에 비록 즉위식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어렵지만, 元正, 冬至, 聖節 등의 朝會에서 고려 국왕이 자포를 입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반면 조선에서는 국왕이 즉위할 때 면복을 입고 있었고, 왕비와 세자, 世子嬪의 冊禮, 종묘 등에서의 親祭 등 중대한 의례에서 국왕이 면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世宗實錄』 五禮 吉禮序例를 통해 이 면복이 永樂 元년에 태종이 사여받은 것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영락

25) 『世宗實錄』 卷78, 19년 8월 28일(乙酉)

태종이 조선국왕에 책봉되면서 면복을 사여받았으나 함께 보냈다는 遠遊冠·絳紗袍는 조선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고려 공민왕이 받은 遠遊冠服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례에 비추어 공민왕의 면복을 조선에서 습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종석, 2010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pp.255-256 참조.

26) 『高麗史』 卷72 志26 輿服1 冠服 文宗 19년 4월; 肅宗 2년 12월; 仁宗 20년 5월; 明宗 2년 5월

27) 『高麗史』 卷64 志18 禮6 凶禮 國恤 元宗 15년 8월 己巳; 忠烈王 34년 8월 甲寅 그러나 이 시기의 국왕 즉위는 원 大都에서 국왕으로 임명된 뒤 사후적으로 고려에서 다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고려의 일반적인 즉위예식의 전형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8) 원 간섭기 이전 시기 고려의 海東天子, 遼河以東天下觀 또는 多元의 天下觀에 대해서는 노명호, 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韓國史研究』 105 참조.

29) 최종석, 2010 「고려시대 朝賀禮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30) 『世宗實錄』 五禮吉禮序例 ‘殿下冕服(依永樂元年賜與之制) 王圭 冕五色珠九旒(旒各九

원년에 받은 면복은 앞서 建文연간(1399~1402)에 받은 면복과 함께 모두 親王의 면복인 袞冕九章이었다.³¹⁾ 즉 玄表朱裏의 색에 五彩九旒를 달아둔 平天板과 青衣 5章· 纁裳 4章으로 구성된 면복이었다.

조선에서는 이렇게 명으로부터 받은 면복을 사위의례에서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민왕이 면복을 사여받을 당시 명 태조가 내린 聖旨에는 면복의 용처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성지에 의하면 면복을 ‘朝觀及奉使之服’이라 하여 황제의 朝廷에 국왕이 朝會할 때와 명에서 보낸 사신을 맞이할 때 입을 것을 명하였다.³²⁾ 그러나 『高麗史』 『禮志』에 기록된 바와 같이, 면복은 宗廟 등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국왕이 착용하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국왕의 즉위예식에서도 입고 있었다.

조선의 국왕 즉위의례에서 새 국왕의 면복 착용은 명에서 면복을 사여하면서 설정한 용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명으로부터 책봉 받은 제후왕으로서의 ‘조선국왕’만이 구장면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³³⁾ 사위의례에서 조선의 새 국왕이 면복을 착용하는 것은 해명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사위의례에서의 면복 착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위의례에 구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제후국 조선에서의 본질적 가치 구현방법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위의례에서 새 국왕이 입어야 할 禮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때는 세종대

玉) 青衣纁裳九章, 畫龍山火華蟲彝五章在衣纁, 藻粉米黼黻四章在裳 (후략)

31) 『太宗實錄』 卷3, 2년 2월 26일(己卯) ‘今朝鮮固遠郡也, 而能自進於禮義, 不得待以子男禮, 且其地遼在海外, 非特中國之寵數, 則無以令其臣民. 茲特命賜以親王九章之服, 遣使者往諭朕意’; 卷6, 3년 10월 27일(辛未); 『明太宗文皇帝實錄』 卷20, 永樂 원년 6월 辛未 ‘朝鮮國王 李芳遠 遣陪臣石璘李原等 奉表謝賜藥并貢馬及方物 且請冕服書籍 上嘉其能慕中國禮文 悉從之 命禮部 具九章冕服五經四書(후략)’; 안명숙·김용서, 『한국복식사』, 교문사, 1996, p.77
 明 惠帝가 조선 태종에게 면복을 사여하면서 朝鮮國王은 子 혹은 男의 등급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親王의 구장면복을 내린다고 하였고, 명 태종 또한 조선에 구장면복을 내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世宗實錄』 卷31, 8년 2월 26일(庚寅). 明 太祖가 高麗 恭愍王에게 冕服을 하사하면서 그 용처를 설명하였는데 ‘冕服 朝觀及奉使之服’이라 하였는데 宗廟 등에서의 祭禮에서도 착용하였다. 한편 ‘遠遊冠絳紗袍 受陪臣朝見之服’라 하여 遠遊冠과 絳紗袍는 신하들로부터 朝見을 받을 때 갖추는 衣冠이라 하였다.
 33) 『世宗實錄』 卷1, 즉위년 9월 10일(丁巳)

후반이다. 이에 앞서 定宗과 太宗, 그리고 世宗 자신이 각기 禪位를 통해 즉위하였는데, 각각의 즉위례에서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종은 公服을 입고 태조가 직접 전하는 敎書를 받았으며, 역시 公服을 입은 左·右 政丞이 받들어 올리는 傳國寶를 받았다. 이어 遠遊冠服을 입고 즉위하여 백관들의 朝賀를 받았다. 정종은 다시 면복으로 갈아입고 태조에게 上王의 尊號를 올렸다.³⁴⁾ 태종은 관련 기록이 자세하지 않지만, 朝服으로 詣闕하여 명을 받았고 壽昌宮에서 즉위하였다고 한다.³⁵⁾ 세종 역시 즉위 관련 기사를 통해서는 어떤 복식을 채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태종이 세자에게 翼善冠을 씌워주고 국왕의 儀仗을 가지고 경복궁으로 가서 즉위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³⁶⁾ 위의 기사들을 검토하였을 때 세종대 후반 사위의례 상정 이전까지는 국왕의 즉위의례에서의 복식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세종은 국왕의 즉위라는 거대하고 중요한 의례에서 국왕의 冠服이 일관되지 않았고 마땅한 참고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예제 정비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세종대 嗣位 儀註 詳定の 결과 조선의 새 국왕은 면복을 입고 즉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위의례에서의 면복 착용 여부는 의주 상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³⁷⁾ 관련 논의를 검토하면 儀註詳定官이 역대의 제도를 詳考하여 세종에게 보고하였는데, 『尙書』

『周書·顧命』의 내용을 근거로 康王의 麻冕黼裳과 제후들의 麻冕蟻裳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蘇軾, 朱熹 등의 평을 함께 보고하였다. 강왕이 즉위하면서 면복을 입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나, 후대의

34) 『太祖實錄』 卷15, 7년 9월 5일(丁丑) ‘… 世子具公服, 詣上前伏地, 上親授敎書, 世子受納懷中 … 次召左右政丞, 亦具公服以入 … 乃以傳國寶授之, 次命李文和, 陪世子以出. 左右政丞奉寶前導, 文和陪世子至勤政殿. 世子改服絳紗袍遠遊冠, 即王位, 受百官賀禮. 改諱曰暉. 以冕服率百官, 上父王尊號曰上王, 率百官拜賀’
 35) 『定宗實錄』 卷6, 2년 11월 13일(癸酉) ‘世子詣闕, 具朝服受命. 御輦至壽昌宮即位, 受百官朝賀, 頒有旨’
 36) 『太宗實錄』 권36, 18년 8월 10일(丁亥) ‘… 親加衝天角帽于世子, 遂令世子備國王儀仗, 往景福宮即位 (후략)’
 37)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16일(戊申)

학자들이 이를 평한 것은 상반되어 있어 세종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의정부 대신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 중 우의정 河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나라 이래의 역대 새 왕들은 즉위할 때 면복을 입기도 하고 吉服을 입기도 하여 그 제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中朝에서 황제가 즉위할 때 면복을 입고 顧命을 받아 즉위하였고 백관들도 朝服을 입었습니다. … 時王之制를 따르기를 청합니다.³⁸⁾

반면 黃喜나 金宗瑞 등은 흉례에 純吉服을 쓸 수는 없으나 王位の 傳受도 큰 일이므로 양자를 참작하여 玄衮袍와 翼善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종은 先賢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정하기 어려운데, 현근포와 익선관은 便服이므로 사위의 큰 예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흉복을 입어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集賢殿에서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의 명을 받은 집현전 관원들의 의견 역시 나뉘어졌는데, 梁誠之, 成三問 등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漢·唐 이래로 새 왕이 즉위할 때 모두 冊禮를 행하고 君臣들이 길복을 입었으며, 지금 中朝에서도 또한 면복을 입었습니다. 成周와 時王之制를 따를 것을 청합니다.³⁹⁾

이들 역시 면복을 입을 것을 청하였다. 한편 崔恒, 申叔舟, 李季甸 등은 모두 凶服을 입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전히 현근포와 익선관을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집현전의 의논에서도 만족스러운 결론이 나오지 않자 세종은 의정부와 六曹의 堂上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고, 결국 면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8)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16일(戊申) ‘(전략) 自漢以後, 歷代新主即位, 或冕服或吉服, 其制不一. 今中朝新皇帝以冕服, 受顧命即位, 群臣亦用朝服. … 乞依時王之制’

39)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16일(戊申) ‘(전략) 自後漢唐新主即位, 皆行冊禮, 君臣吉服, 今中朝亦用冕服. 乞依成周及時王之制’

이 논의에서 볼 수 있듯, 황제가 용처를 규정하여 사여한 면복을 아직 책봉 받지 않은 새 국왕이 즉위할 때 입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황제가 하사한 면복을 새 국왕이 입는 것이 僭越하다는 류의 반대는 없었던 것이다. 두 가지 상충하는 예의 가치, 즉 大喪을 맞아 애통함을 드러내는 흉복을 입을 것인지, 새 국왕의 즉위라는 嘉禮를 맞아 그 길함을 보일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점이었다. 이 논의에서 면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이 앞서 보았듯 고제와 시왕지제의 일치였다. 비록 강왕의 마면보상의 제도는 후대에 상세히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으나 면류관을 사용한 것이 확실한, 經傳에 기록되어 있는 三代之 聖人들의 고제였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서 강왕의 마면보상과 함께 明 英宗이 등극할 때 면복을 입었던 것은 시왕지제로서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명 인종 소황제 이후의 황제들은 세종 숙황제를 제외하면 모두 인종의 등극의주를 기본으로 하여 즉위하였다. 이 儀註에서 인종은 袞冕을 입고 천지와 조종, 대행황제에게 受命을 고하고 즉위하였다. 조선에서는 명 황제가 면복을 입고 즉위하는 것을 강왕의 마면보상과 함께 시왕지제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 나라의 군주 강왕이 마면보상을 입고 즉위하였고, 명의 군주 영종 역시 면복을 입고 즉위하였다. 왕위 전수는 극히 重하고 吉하다는 것, 그리고 大喪을 맞아 슬픔을 다해야 한다는 상충하는 가치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던 조선초기 당국자들은, 이 고민을 고제와 시왕지제를 참고하면서 해결하였다. 곧 새 국왕이 면복을 입고 즉위함으로써 삼대의 聖君과 時王이 모두 따르고 있는 가치를 조선에서도 구현한 것이다. 이 당연한 가치는 上古와 當代, 중국과 조선이라는 사·공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구현해야 하는 즉위례의 본질로서, 이 시대의 보편이었다. 사위에서 새 국왕이 면복을 입음으로서 주와 명에서 구현한 예의 본질을 조선에서도 구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조선은 보편 가치의 한 부분을 실현한 것이다.

다만 조선이 보편문물을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명 황제의 책봉을 받는 ‘제후’가 다스리는 外藩國이었다. 사위에서 면복의 착용을 통해 조선에서

생각하는 예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명 중심의 질서를 體化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천명을 받은 천자의 의무인 字小와 책봉을 받은 제후의 의무인 事大는 당대인들에게 보편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이었다.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유지하며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 즉 제후국 분의 역시 조선이 구현해야 하는 보편 문물의 하나였다.

제후국 분의의 준수는 명에서 頒賜한 면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명의 제후국으로서 명이 인정한 조선의 위상에 맞게 황제가 내려준 九旒九章의 면복을 입음으로서 자신들의 의무, 즉 제후국 분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직접 마면보상을 만들려 하지 않고 명 황제가 내려준 면복을 착용함으로써 제후국 분의를 지키고 동시에 고제와 시왕지제가 담고 있는 즉위의례의 본질도 구현하고 있었다. 면복의 착용과 관련하여 조선이 제후국이라는 사실이 논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당대인들에게는 극히 당연한, 이의의 여지가 없는 명제이자 越分の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3. 冊命禮 구현을 통한 후계자 지명 - 傳位遺敎

전위유교는 후계자에게 국왕으로 즉위할 것을 명하는 대행왕의 敎書를 말한다. 『世宗實錄』 五禮 및 『國朝五禮儀』 「凶禮」 모두 사위례 안에 유교를 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위유교는 國恤의 첫 단계인 顧命을 발한 직후 대신들이 작성한다.⁴⁰⁾ 이렇게 작성된 유교를 成服 이후 진행되는 사위례에서 영의정이 사왕에게 바치고, 이 유교와 함께 대보를 받은 사왕은 온전한 조선의 국왕이 된다. 조선의 새 국왕이 이 두 의물을 반드시 물려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의물들을 통해 대행왕에게서 새 국왕에게로 이어지는 국왕의 권위, 정당성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새 국왕은 이 의물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文宗은 『세종실록』 오례 사위에 수록된 의주를 따라 즉위한 첫 국왕으로,

40) 『世宗實錄』 五禮國恤顧命; 『國朝五禮儀』 「凶禮」 國恤顧命

이 의주대로 면복을 입고 세종의 柩前에서 遺命과 大寶를 받고 국왕으로 즉위하였다.⁴¹⁾ 문종 이후로는 端宗과 燕山君이 전형적인 사위의 형태로 즉위한 조선전기의 국왕이었는데, 단종의 즉위에서는 문종의 전위유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산군 즉위기사에는 都承旨가 遺敎를 담은 상자를 櫝宮의 남쪽에 가져다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²⁾ 연산군의 즉위는 『국조오례의』 편찬 이후 사위 의주 적용의 첫 사례였는데,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흉례」의 사위 규정이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감안하면, 전위유교의 가치는 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위 의주의 첫 적용사례인 문종의 즉위에 보이는 세종이 내린 유교는 기록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喪主인 왕세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3일 내에는 죽을 먹고 그 이후에는 밥을 먹도록 명을 내리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⁴³⁾ 세종이 내린 유명의 이 내용은 후대의 새 국왕들에게 大妃나 大臣들이 음식을 들기를 청하면서 항상 거론하는 부분이다.⁴⁴⁾ 세종이 내린 유교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國喪 과정에서 세자가 음식을 드는 시기까지도 유명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국왕 자신의 병이 깊어 정사를 돌보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세자에게 전위할 것이며, 세자가 왕위에 오를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고 繼述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교에 담긴 내용은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유추할

41) 『文宗實錄』 卷1, 즉위년 2월 23일(丁酉)

한편 문종 즉위 기사에 보이는 柩前은 세종의 관, 梓宮 앞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대행왕의 구전에서 즉위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의례 전통이다. 唐에서는 宗廟가 아닌 대행황제의 관 앞(柩前)에서 새 황제가 즉위하였다. 대행황제의 관 앞에서 새 황제가 즉위하는 형태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宋代에 들어서는 관 앞에서 즉위하라는 명이 遺詔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明代에는 『大明會典』 「登極儀」에서 대행황제의 궤연 앞에서 受命을 고하고 면복을 입고 배례를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柩前即位라는 전대로부터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燕山君日記』 卷1, 즉위년 12월 29일(甲申)

43) 『文宗實錄』 卷1, 즉위년 2월 19일(癸巳) ‘大行王有遺敎 三日之內小食粥 三日之後小食食, 庶免疾病 保全性命’

44) 『燕山君日記』 卷1, 즉위년 12월 26일(辛巳)

수 있을 것인데, 선위교서가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위유교와 선위교서의 차이점은 교서를 내리는 국왕의 흥서 여부일 뿐, 후계자에게 국왕으로 즉위할 것을 명하는 교서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선위교서를 통해 전위유교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면서 내린 교서는 전위유교의 내용 유추에 있어서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이 교서에서 단종은 스스로 어리고 궁궐 깊숙이 위치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틈타 兇徒들이 난을 일으켜 나라를 경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숙부 首陽大君은 忠義를 갖추고 흉도들을 물리쳤으며 덕망이 높아 天命과 人心이 歸依하였으므로 그에게 왕위를 넘길 것이며 臣民들에게 새 국왕을 잘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⁴⁵⁾ 길지 않은 선위교서이지만, 국왕 자신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大任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위의 이유, 후계자로 지명한 수양대군의 자질과 충의의 칭찬을 통한 후계자 지명의 사유, 그리고 새 국왕을 잘 보좌할 것을 당부하는 訓諭로 구성되어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은 전형적인 전위교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황제가 崩御한 후 傳位遺詔를 천하에 반포하는 명의 경우도 조선의 전위유교와 비교대상이 된다. 仁宗 昭皇帝도 전위유조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덕이 적은데도 祖宗의 鴻業을 이어받아 천하에 군림하였으나 위로는 太宗의 山陵의 役事도 끝마치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편히 쉬지 못하였다고 自責하고 있다. 이어서 長子 皇太子의 天性이 仁厚하고 孝友하며 英明하여 先帝(太宗)가 기대하셨고 백성들은 황태자가 즉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喪制를 검약하게 하고 백관들은 각기 자신의 직임을 다할 것 등을 명하고 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宣宗이 남긴 유명에서도 인종의 전위유조와 동일한 구조, 내용을 담고 있다.⁴⁶⁾ 더 이른 시기인 唐代 초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高祖는 전위조

45) 『世祖實錄』 卷1, 즉위년 윤6월 11일(乙卯) ‘予小子遭家不造, 幼沖嗣服, 深居宮掖之中, 內外庶務, 蒙未有知, 致兇徒煽亂, 國家多故, 叔父首陽大君奮發忠義, 左右我躬, 克清群兇, 弘濟艱難. 然兇徒未殄, 變故相仍, 屬茲大難, 非予寡躬所能鎮定, 宗廟、社稷之責, 實在我叔父. 叔父先王介弟, 以德以望, 有大勳勞於國家, 天命人心之所歸也. 茲釋重負, 以付畀我叔父. 嗚呼 宗親文武百官大小臣僚, 其匡輔我叔父, 以對揚祖宗之休命’

서를 통해 자신이 늙어 천하를 다스리는데 힘이 부치므로 帝位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太子는 어렸을 때부터 吉兆가 있었고 왕조 건설에서의 功이 컸으므로 그에게 전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태종에게 주어진 策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공포되었다.⁴⁷⁾ 명 황제들의 전위유조와 당 고조의 전위조서 모두 태자의 덕과 자질에 대한 칭찬을 통해 그가 즉위하여 천하를 다스릴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선위교서, 중국 역대의 전위유조(조서)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전위유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단종의 선위교서는, 비록 정치적 열세에 몰린 단종이 숙부에게 讓位할 것을 강제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傳位이고, 따라서 정치적 修辭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격변기라는 배경은 사위나 선양이나 동일하다. 이 격변기에 새 국왕에게 왕위를 전수하는 이유를 교서를 통해 中外에 널리 알림으로서 새 국왕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교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당과 명에서의 전위유조(조서) 검토를 통해서도 단종의 선위교서와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위교서와 전위유교의 기본적 속성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종의 선위교서를 통해, 그리고 당과 명의 전위유조(조서)를 통해 사위에 규정된 전위유교의 목적을 유추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곧 전위의 사유와 후계자의 자질을 교서를 통해 알림으로써 새 국왕 즉위의 정당성을 보조하는 것이 전위유교의 역할이다.

전위유교가 왕위를 ‘넘겨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지명’의 요소는 그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대행왕은 유교를 통해 왕세자를 지명하여 왕위를 물려받으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고 새 국왕은 受教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권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새 국왕이 물려받는 권위라는 측면에서 전위유교의

46) 『明 仁宗實錄』 卷10, 洪熙 원년 5월 辛巳; 『明 宣宗實錄』 卷115, 宣德 10년 1월 乙亥

47) 하워드 웨슬러 저, 임대회 역,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pp.231-234

48) 이와 관련하여 지배자가 후계자를 지명하고 추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 권위는 승계된다는 고전적인 명제는 조선의 전위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Max Weber 저, 임영일 외 역, 1991 『지배와 정당성』 『막스 베버 선집』, 까치,

역할은 상세한 내용이 전하지 않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선위유교와 비교한 것과 동일하게 유사한 경우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후계자 지명을 통한 정당성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明宗의 薨逝에 따른 宣祖의 즉위를 들 수 있다. 주지하듯 順懷世子가 요절한 뒤 명종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흥서하였다. 명종은 흥서 직전 위독하여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때 왕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사전에 명종이 河城君(宣祖)을 후계자로 결정하였고 이를 적은 書簡이 있음을 말하여 선조가 즉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⁴⁹⁾ 국왕의 흥서와 후계자의 부재로 왕위 승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행왕의 을축년(1565) 후계자 지명이 사위에서의 전위유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하성군은 명종의 傍系로 入承大統한 경우이기에 세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선조 즉위 직후에 垂簾聽政을 해야한다는 대신들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다.⁵⁰⁾ 세자책봉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후계자 지명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세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차기 국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선조의 아버지인 德興君은 中宗의 후궁 소생으로 선조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庶系로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차기 국왕으로서의 정당성에 상당한 흠결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선조가 무리 없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행왕의 후계자 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새 국왕 즉위의 정당성은 앞선 세자 책봉을 통해 확보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 전위유교(후계자 지명)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세종실록』 오례의 사위에 규정된 전위유교는 선조의 즉위 사례에서 보이는 명종의 서간과 같은 비중을 지니지는 못할 수도 있다. 즉, 세종과

신료들이 설계한 사위의주에서는 왕세자 책봉을 이미 거치고 충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차기 국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왕세자의 즉위를 상정하고 있기에, 전위유교는 새 국왕에게 결정적인 정당성 부여의 기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전위유교가 가지는 후계자 지명과 자질에 대한 찬사는 여전히 새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성립보다 훨씬 후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淸의 太子密建法은 조선의 전위유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聖祖 康熙帝는 두 차례의 태자 冊封과 廢立을 거친 뒤, 태자 책봉을 통한 후계자 확정을 포기하였다. 태자 책봉 후, 태자를 중심으로 한 朋黨의 결집과 권력 투쟁이 가장 큰 이유였다. 대신 강희제는 후계자를 알리지 않고 후계자의 이름을 쓴 상자를 乾淸宮의 正大光明 현판 뒤에 넣어두었다가 자신의 붕어 후 대신들의 입회 아래 이상자를 열어 새 황제를 지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태자밀건법으로, 이렇게 즉위한 世宗 雍正帝가 이를 제도화하였다.⁵¹⁾ 황제의 붕어 직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후계자 지명을 통해 새 황제가 등극하는데, 이는 지명을 통한 후계자의 정당성 부여라는 요소가 극대화된 절차라 할 수 있다. 청의 태자밀건법과 조선의 전위유교는 후계자 지명과 그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후계자를 지명하여 그에게 국왕으로 즉위하라는 명을 내리고 이를 통해 새 국왕의 즉위에 정당성을 부여 또는 보조하는 전위유교를 전수하는 절차는 주의 冊命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尙書』

「周書·顧命」 편에서는 周 成王이 崩御한 뒤 康王이 뒤를 이어 즉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성왕의 병이 깊어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왕은 召公, 畢公 등의 元勳들을 모아 주 왕실의 천명과 태자를 잘 보필할 것을 말한다. 이튿날 성왕이 붕어하고 7일이 지나 장례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태자가 즉위한다. 이때 성왕이 아들 강왕에게 내리는 훈계를 기록한 것이 바로 冊이고, 太史가 이 책을 강왕에게 읽어주는 것이 책명

p.193).

49) 『明宗實錄』 卷34, 22년 6월 28일(辛亥); 『練藜室記述』 卷12 「宣祖朝 故事本末」

50) 『明宗實錄』 卷34, 22년 6월 28일(辛亥)

51) 임계순, 『淸史 :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pp.120-121

의례이다. 성왕이 남긴 책은 천명을 받아 나라를 일으킨 文王과 武王의 뜻을 잘 이어받을 것을 강왕에게 당부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⁵²⁾ 冊에 기록된 성왕의 遺命은 앞서 발한 顧命의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되풀이한 것이다. 태사가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들은 강왕은 父王의 유명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한 뒤 부왕에게 行禮한다.

이상과 같은 주의 책명의례를 염두에 두고 조선의 사위례를 검토하면, 사위가 주의 책명의례를 구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세종실록』 오례 흥례는 「國恤顧命」에서 시작한다. 국휼 첫 단계의 명칭을 ‘顧命’으로 정한 것부터 『상서』의 기록을 의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명의 절차 또한 『상서』의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휼고명에서 국왕의 병이 위중해지면 掖庭署에서 幄帳과 黼辰를 思政殿에 설치하고 국왕을 부축하여 几에 기대도록 하였다. 왕이 고명을 받으면 왕세자가 執政大臣등과 함께 이를 듣도록 하였다. 국휼고명이 규정한 절차는 『상서』에 기록된 성왕의 고명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주 왕실의 책명과 관련한 의례상의 절차도 조선의 사위와 매우 유사한데, 강왕이 麻冕黼裳을 입고 태사가 읽어주는 책명을 들은 뒤 성왕에게 行禮하도록 하고 있다.⁵³⁾ 조선의 사위례의 절차는 앞서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면복을 입은 사왕이 빈전에서 전위유교를 영의정으로 부터 받아 읽고 근시에게 넘겨주고 수보 후 대행왕에게 四拜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成周와 조선 사이에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의례에 세부적인 변화가 개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기본틀은 동일했다.

앞서 2절에서 사위례에서의 면복 착용에 대한 논의 검토를 통해 새 국왕이 면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고제 및 시왕지제와의 일치를 근거로 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고제 및 시왕지제와의 일치를 근거로 면복을 착용할 것을 주장하였던 신료들, 金汶 · 金禮蒙 ·

52) 『尙書』 「周書 · 顧命」 ‘曰 皇后憑玉几 道揚末命 命汝 嗣訓 臨君周邦 率循大卞 變和天下 用答揚文武之光訓.’ 해석은 이기동 역해, 『서경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pp.652-654

53) 『尙書』 「周書 · 顧命」 ‘王再拜興 答曰 眇眇予末小子 其能而亂四方 以敬忌天威 乃受同瑁 王三宿三祭三啜 上宗曰 饗’

李賢老 · 梁誠之 · 成三問 · 鄭昌 · 李芮 · 柳誠源 · 李克堪 등은 모두 강왕이 면복을 착용하였던 사실과 함께 책명의 의례를 거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즉 강왕이 즉위하면서 면복으로 책명례를 행하였고 이후 漢 · 唐代에도 새 황제가 즉위할 때 모두 책명례를 거쳤다는 것이다. 시왕지제를 따라 면복을 입을 것을 주장한 우의정 하연 역시 명 황제가 면복을 입고 顧命을 받아 즉위하였으므로 조선에서도 면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⁴⁾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편의례를 사위례에서 구현하기 위해 새 국왕이 면복을 입고 책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면복과 책명은 분리하여 일부만 取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논의를 통해 새 국왕이 면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그가 책명례를 거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국왕의 즉위의례인 사위례 안에 책명례를 구현하는 것은 당대인들의 보편 지향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古制로서의 周 제도인 책명의례가 경전에 수록되어 있고, 時王之制로서 明의 황제가 면복을 입고 大行皇帝의 顧命을 받아 즉위하였던 것처럼 조선도 당연히 책명이라는 보편적인 제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종실록』 오례의 사위가 남았다. 이 사위 안에서 주 성왕의 책에 대응하는 대행왕의 전위유교를 새 국왕이 물려받도록 함으로써 조선에서도 보편 의례인 책명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후국 조선에서 보편 의례를 구현하는 방법은 당대인들의 고민의 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사위례로 결정되었다. 조선이 고제나 시왕지제를 일방적으로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경전에 실려 있는 주 강왕의 책명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전위유교를 영의정이 바치고 왕세자가 받아 읽어보는 형식으로 결정하였다. 시왕지제인 명 황제의 등극의례에서 대행황제의 전위유교가 즉위의례에 앞서 반포되는 것과 비교하여도 조선과 명의 차이가 드러난다.⁵⁵⁾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는 고제와 시왕지제가 모두

54)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16일(戊申) ‘右議政河演曰 … 今中朝新皇帝以冕服, 受顧命即位, 群臣亦用朝服 … 直提學金汶, 副校理金禮蒙 · 李賢老, 修撰梁誠之 · 成三問, 副修撰鄭昌 · 李芮, 博士柳誠源 · 李克堪曰 蘇氏雖以康王之事爲非禮, 然朱子及葉, 呂, 陳氏, 皆未嘗必取蘇說, 況召公畢公以盛德元老, 當國大事, 必相與反覆熟議, 決不草草爲失禮之舉也. 自後漢唐新主即位, 皆行冊禮, 君臣吉服, 今中朝亦用冕服, 乞依成周及時王之制’

지향하는 의례의 본질인 책명을 통한 후계자의 지명을 수교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었다.

4. 조선국왕의 권위와 정당성 - 大寶

이상에서 검토한 전위유교와 함께 嗣王을 온전한 국왕으로 만들어 주는 다른 하나의 儀物은 大寶이다. 國寶, 傳國寶 또는 傳國璽라고도 불리는 대보는 국가 통치의 권능 또는 국왕 자체를 상징하는 의물로서 국왕의 儀仗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도장에 이렇게 큰 의미를 담는 것은 秦代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始皇帝가 藍田의 白玉을 얻어 그것으로 璽를 만들었고, 漢 高帝가 入關하면서 이 옥새를 획득하였다. 이후 이 옥새를 佩用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을 ‘傳國璽’라고 하였다. 이 전국새와 별도로 行璽와 信璽 총 6璽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게 되었는데, 황제의 璽(皇帝行璽, 皇帝之璽, 皇帝信璽)는 帝國 국내의 명령에 사용하고, 天子의 璽(天子行璽, 天子之璽, 天子信璽)는 외국의 제후를 상대로 한 문서나 귀신과 관계된 일에 사용되었는데, 이 전통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後周에서는 6璽에 더하여 神璽와 傳國璽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 두 璽는 모두 모셔두기만 할 뿐, 날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隋代에 이르러 神璽는 그대로 모셔두고 사용하지 않은 반면, 受命璽는 封禪에 이용하였고, 나머지 6새는 기존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唐代에 들어 貞觀 연간에 受命璽를 따로 만들었고, 天寶 연간에는 전국새를 承天大寶로 바꾸었다. 이 변화를 제외하고는 수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大朝會에서는 寶를 받들고 御座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었고,

55) 『明宣宗章皇帝實錄』卷1, 洪熙 원년 6월 辛丑 ‘上至自南京 先是仁宗皇帝上賓 遺詔上早正大位 宮中以上未還秘不發喪 至是驛報 上至良鄉 宮中始出遺詔 文武百官常服於午門外立班 行四拜禮 聽 宣讀訖 舉哀 再四拜禮 … 捧遺詔 往盧構橋迎上 中官先於盧構橋設幕次香案俟 上至開讀 上既至聞有遺詔 慟哭幾絕’; 『大明會典』 「登極儀」 肅皇帝登極儀 ‘正德十六年三月十四日 奉武宗皇帝遺詔 迎上入承天統 次日 皇親駙馬司禮監太監內閣大學士禮部尚書等官 齋捧詔諭金符馳詣安陸藩府奉迎’

元正 朝會에서는 神寶와 受命寶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고 있었다.⁵⁶⁾ 宋代의 경우 태조는 後周 廣順 연간에 만든 寶 2개를 받으면서 즉위하였고, 태종과 眞宗 연간에 각각 承天受命之寶와 恭膺天命之寶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송대에도 역시 조회에 寶들을 御前에 늘어세웠고 大禮에서는 儀仗에 포함시키고 있었다.⁵⁷⁾ 시황제 이후로 변천을 거듭하면서도 황제의 새인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특히 전국새나 神璽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다른 새인들에 비해 비중이 더 컸다.

조선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전기 제후국의 제도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것에 비해 降格되기는 하지만, 대보는 중국의 전국새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위유교가 만들어지지 못하여 수교 절차가 생략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대보를 전수하는 절차는 생략된 적이 없었다. 즉 모든 국왕들은 반드시 대보를 받아야만 했고, 그만큼 대보는 국왕에게 중요한 의물이었다. 그렇다면, 대보가 국왕의 즉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대보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검토에 앞서 대보의 실체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의 규정상으로는 단지 대보로만 지칭한 경우가 보일 뿐, 그것이 정확히 어떤 印章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기록들을 모아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우선 『世宗實錄』

「嘉禮序例」 大駕鹵簿를 보면 국왕의 儀仗에 수행하는 인장에 大寶, 施命寶, 諭書寶, 昭信寶가 포함되어 있다.⁵⁸⁾ 그렇다면 대보는 나머지 세 인장과는 다른 존재임이 명확하다.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주조한 行寶 및 信寶와는 구분되는 다른 인장인 것이다. 세종대에 들어 행보와 신보의 주조 및 사용처를 논의하는 가운데 ‘황제가 내린 대보의 印文이 조선국왕을 칭하고 있어 조선 경내의 일에 사용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56) 『通典』 禮23 沿革23 嘉禮8 「天子諸侯玉佩劍綬璽印」

57) 『文獻通考』 卷115 王禮考10 「圭璧符節璽印」

58) 『世宗實錄』 「嘉禮序例」 大駕鹵簿 ‘大寶 · 施命 · 諭書 · 昭信之寶各一以次而行, 尙書少尹一人承注簿直長錄事各二人隨之’

있다.⁵⁹⁾ 즉 대보는 명 황제가 조선국왕에게 내려준 것으로서 그 인면에는 ‘朝鮮國王之印’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명 황제가 내려준 조선국왕지인은 언제 조선에 온 것일까? 바로 태종이 명 太宗으로부터 誥命과 印信을 받아 조선국왕으로 책봉될 때 받은 그 인신이 대보로서, 태종 3년에 조선으로 보내진 것이다. 태종은 정종으로부터 진위를 받은 후 조선국왕으로 책봉해줄 것을 명에 주청하였고, 明惠帝는 태종의 이런 청을 받아들여 고명과 인신을 내려주었다.⁶⁰⁾ 이로써 태종은 조선의 국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명 황제의 책봉을 받은 국왕이 되었다. 한편 명에서 靖難의 變으로 燕王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태종은 河崙을 賀登極使로 삼아 파견하였다. 京師로 간 하륜이 명 태종에게 인신과 고명을 다시 내려줄 것을 청하였고,⁶¹⁾ 명 태종은 이를 받아들여 태종을 다시 책봉하였다. 다시 책봉하면서 고명과 인신을 내려주었는데, 이때 받은 인신이 바로 ‘朝鮮國王之印’이 새겨진 金印으로서 이후 조선의 대보가 된 것이다.⁶²⁾ 그리고 이 책봉이 이루어진 뒤 곧이어 成石璘을 謝恩使로 파견하여 혜제로부터 받았던 고명과 인신을 반납하였다.⁶³⁾ 이상을 정리하면, 명 태종이 조선의 태종을 조선국왕으로 책봉하면서 보내온 조선국왕지인이 조선전기에 사용된 조선의 대보이다. 태종의 조선국왕 책봉 이전에도 전국보의 존재가 보이는데, 정종과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 전국보를 받았다.⁶⁴⁾ 이 전국보에는 ‘국왕신보’라 새겨져 있었는데, 세종대에 태종이 받은 조선국왕지인의 예를 따라 금으로 ‘國王行寶’와 ‘國王信寶’를 제작하여 각기 사용하도록 하고, 欽賜大寶, 즉 조선국왕지인은 事大文書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⁶⁵⁾ 이후 고제를 詳考하여 行寶를 施命之寶, 信寶를 昭信之寶 등으로 고쳐 새로 주조하면서 조선 국왕의 어보가 완비된다.⁶⁶⁾

59) 『世宗實錄』 卷58, 14년 10월 12일(丁酉) ‘我朝帝賜大寶之文, 稱朝鮮國王, 不宜用於境內常事’

60) 『太宗實錄』 卷1, 1년 6월 12일(己巳)

61) 『太宗實錄』 卷5, 3년 4월 2일(戊申)

62) 『太宗實錄』 卷5, 3년 4월 8일(甲寅)

63) 『太宗實錄』 卷5, 3년 4월 21일(丁卯)

64) 『太祖實錄』 卷15, 7년 9월 5일(丁丑); 『定宗實錄』 卷6, 2년 11월 11일(辛未)

65) 『世宗實錄』 卷59, 15년 3월 2일(乙卯)

이상의 검토를 통해 조선의 대보가 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조선국왕지인’이 새겨진 금인임을 확인하였다.⁶⁷⁾ 앞서 대보가 국가 통치의 권능과 국왕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조선에서 사위 의주를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사례인 명 황제의 등극의를 검토하고 이어서 조선의 사례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흥례와 관련한 의주를 규정하여 천하에 알리는 것을 기피하였고, 따라서 구체적 의주가 남아있지 않다. 明代에도 이러한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1510년에 이르러 『大明會典』을 편찬하면서 「登極儀」의 제목으로 황제의 즉위의를 수록하였다. 「등극의」에는 세 개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는데 太祖 高皇帝 登極儀, 仁宗 昭皇帝 登極儀, 世宗 肅皇帝 登極儀가 그것이다. 이 중 태조의 등극의는 受命創業한 開國皇帝의 등극의이고, 인종 등극의는 황태자의 즉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선의 사위와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명 세종은 입승대통한 황제로서 그 의주에서 인종의 등극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藩王을 맞이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도 조선의 사위례 제정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므로 비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명회전』 역시 사위례 제정보다 나중에 편찬된 것이지만, 조선에서 참고하였던 영종의 즉위의례가 인종의 등극의를 襲用하였으므로 『大明會典』 「仁宗 昭皇帝 登極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검토할 수 있다.

명 인종은 태종의 태자로서, 태종이 북방으로 親征을 나갔다가 行在에서 붕어하면서 남긴 전위유조를 받아 황제로 즉위하였다.⁶⁸⁾ 전위유조가 도착한 직후 황태자는 親王, 公, 侯, 駙馬伯들과 백관들로부터 황제로 즉위할 것을 청하는 表箋을 받았으나 여러차례 사양하다 결국 즉위를 승낙하고 吉日을 택하고 의주를 마련하도록 하였다.⁶⁹⁾ 택일 후 등극의례가

66) 『世宗實錄』 卷102, 25년 10월 2일(癸未)

67) 국립고궁박물관, 『왕의 상징 御寶』, 국립고궁박물관, 2012, p.24

68) 『明 仁宗昭皇帝實錄』 卷1上 永樂 22년 7월 辛卯 ‘太宗皇帝以征虜寇上賓於行在’

거행되는 날, 華蓋殿에는 御座를 설치하고 奉天殿에는 寶座, 定時鼓, 寶案 등을 설치한다.⁷⁰⁾ 새벽에 公侯를 보내어 천지, 종묘, 사직에 즉위를 고한다.⁷¹⁾ 상복을 입고 대행황제의 几筵 앞에서 受命을 고한 후, 면복을 갈아입고 봉천전에서 천지에 고하고 奉先殿에서 祖宗에게 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시 대행황제의 輓으로 돌아와 五拜三叩頭禮를 행한 후, 봉천전에서 즉위한다.⁷²⁾ 이후 백관들로부터 하례를 받고 詔書를 내려 천하에 즉위를 알리고 大赦令을 내린다.⁷³⁾ 이상이 인종 소황제 등극의 절차이다.

인종은 대행황제의 輓에서 수명을 고하고 이후 천지, 조종에게 수명을 고한 후 봉천전에서 즉위하였다. 황제가 天地에 受命을 고하는 장소가 봉천전이었고 즉위를 하는 곳도 봉천전이다. 이 봉천전에 尙寶司가 寶案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조선의 사위 의주처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황제가 즉위하는 봉천전에 보안을 두었다는 것을 통해 명 황제 역시 옥보를 받음으로써 천명을 받은 황제가 되는 것을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등극의례 진행 초기부터 옥보를 봉천전 보안에 두었던 告天地, 謁告廟 후에 두는 것이든 모두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인수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卽位改元을 상징하는 정시고의 존재와 함께, 태조가 즉위하면서 圓丘에서 玉寶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야에 넣는다면, 옥보는 정시고와 함께 새 황제의 천명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시고가 개원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린다면, 천명을 상징하는 옥보를 물려받는 절차는 새 황제가 태조로부터 이어지는 천명을 함께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⁷⁴⁾

69) 『明 仁宗昭皇帝實錄』 卷1上 永樂 22년 8월 癸丑; 甲寅; 乙卯; 丙辰

70) 『大明會典』 卷45 禮部3 「登極儀」 ‘先期 司設監等衙門 于華蓋殿 陳御座于中 仍于奉天殿設寶案 欽天監設定時鼓 尙寶司設寶案于奉天殿’

71) 『大明會典』 卷45 禮部3 「登極儀」 ‘是日早 遣官祇告天地宗廟社稷’; 『明 仁宗昭皇帝實錄』 卷1上 永樂 22년 8월 丁巳 ‘以嗣位 遣英國公張輔告天地 定國公徐景昌告宗廟 寧陽侯陳懋告社稷’

72) 『大明會典』 卷45 禮部3 「登極儀」 ‘上具孝服 設酒果 親詣大行皇帝几筵前 祇告受命 畢卽于奉天殿設香案酒果等物 具冕服行告天地禮 隨赴奉先殿謁告祖宗 畢仍具袞詣大行皇帝几筵前 行五拜三叩頭禮 畢詣母后前行五拜三叩頭禮 畢詣奉天殿卽位’

73) 『大明會典』 卷45 禮部3 「登極儀」 ‘上由中門出陞寶座 錦衣衛鳴鞭 文武百官上表稱賀 上命百官免賀免宣表 止行五拜三叩頭禮 百官出至承天門外 候翰林院官齋詔書 用寶訖 鴻臚寺官請頒詔 翰林院官捧詔授禮部官 由奉天殿左門出 錦衣衛于午門前候 捧詔置雲蓋中 導至承天門開讀’; 『明 仁宗昭皇帝實錄』 卷1上 永樂 22년 8월 丁巳

조선에서는 사위례 설계에 이러한 인종의 등극의주를 습용한 영종의 즉위 의례를 참고하였을 것이다.⁷⁵⁾

한편 前朝 고려에서도 전국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睿宗은 昇遐를 앞두고 태자(仁宗)를 불러 傳位할 뜻을 밝히고 韓安仁을 시켜 國璽를 가져다 주도록 하였다.⁷⁶⁾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고려에서도 국새가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었다. 조선도 대보에 대해 중국 역대 왕조들 및 고려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대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는 태조의 즉위이다. 恭愍王의 妃인 安大妃는 教旨를 내려 恭讓王을 폐위한 뒤 전국새를 大妃殿에 두고 庶務를 처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교지를 내려 이성계를 왕위에 즉위하도록 하였고, 이성계는 대비전에 두고 있었던 전국새를 받아 즉위 하였다.⁷⁷⁾ 이 기록에서 전국새를 받들어 왕대비전에 두었다는 서술을 넣은 것은 그만큼 전국새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곧 대비가 서무를 처결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통치의 권한을 상징하는 전국새, 곧 대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새로 즉위한 태조에게 전국새를 넘긴 것은 이를 통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고스란히 태조에게 귀속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통치권 귀속의 대상이 국왕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보가 국왕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의 즉위 역시 대보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태종이 세종에게 전위하는 과정에서 대보가 등장하는데, 다른 기록들에 비하여 대보가 가지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되어 있다. 태종은 왕세자에게 국보를 넘겨주기 위해 尙瑞司에 명하여 국보를 가져오라고 누차에 걸쳐 명하였으나, 상서사의 관원들은 대보를 받들어 올리는 것을 망설였다. 결국

74) 명 태조 고향제 등극의에 의하면 南郊에서 祭天 후 신하들로부터 옥보와 면복을 받아 金椅에 앉음으로서 천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大明會典』 「登極儀」 太祖高皇帝登極儀

75)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丙申(16일)

76) 『高麗史』 「世家」 睿宗 17년 4월 乙未

77) 『太祖實錄』 卷1, 1년 7월 17일(丙申) ‘百官奉傳國璽, 置于王大妃殿, 庶務就稟裁決 … 大小臣僚及閑良耆老等奉國寶詣太祖邸, 填咽閭巷’

국왕의 독촉을 이기지 못한 상서사 관원이 국보를 가지고 왔으나 領敦寧府事 이하 대신들은 가져온 국보를 태종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태종이 知申事 李錫命을 억박질러 그로부터 국보를 받은 뒤, 급히 불려온 세자의 소매를 붙잡고 국보를 넘겨주었다. 세자는 처음에는 국보를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강고한 부왕의 의지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고, 억지로 세자에게 국보를 넘겨준 태종은 자신의 거처를 옛 세자궁으로 옮겼다.⁷⁸⁾

대보의 전수 자체가 왕위의 전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태종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서사에서 대보를 금방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상서사에서 가져온 대보를 국왕에게 바치는 것을 대신들이 막았던 것도, 왕세자가 부복한 채 선뜻 대보를 받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보와 그 전수의 의미를 당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실록의 기사에서도 대보를 전한 것을 가장 먼저 써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양상은 讓寧大君의 廢世子에 앞서 태종이 세자에게 전위를 시도하였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대보를 넘겨주는 것을 통해 전위하려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대보는 단 한 사람, 국왕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태종의 전위시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후대로 내려온 시기의 中宗은 反正을 통해 즉위하였는데, 즉위와 관련한 기사에서도 대보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종반정 직후 반정세력은 晉城大君을 私邸에서 받들어 景福宮 思政殿으로 모셨다. 이어 燕山君에게 사람을 보내어 正殿을 피하고 옥새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없이 대보를 내어주었다.⁷⁹⁾ 이 기사에서도 대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다. 연산군은 廢位될

78) 『太宗實錄』 卷36, 18년 8월 8일(乙酉) ‘(전략) 敎承政院曰 今日有開印事, 速納大寶. 代言等號泣至報平殿門外, 上閉門不納, 令內臣召世子, 命尙瑞司進大寶, 督之再三 … 領敦寧柳廷顯及政府六曹功臣三軍總制六代言等排闥直入, 至報平殿門外, 呼天痛哭, 請寢禪學, 共執大寶, 令不得進 … 上見世子曰 兒乎, 今授大寶, 受之. 世子俯伏不起, 上執世子袖起之, 而授以大寶, 即入于內 (하략)’

79) 『中宗實錄』 卷1, 1년 9월 2일(戊寅) ‘(전략) 人心皆屬晉城, 事勢如此, 請避正殿出大寶云爾, 則必從之矣. 遂遣承旨韓洵內官徐敬生于昌德宮, 令敬生具告. 答曰 我罪重大, 固知至此. 願好爲之. 即令侍女, 出大寶, 授尙瑞院官員 (후략)’

군주이기에 대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대보를 내놓음으로써 왕좌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전을 피하여 물러나라고 한 것은 정전이 一國의 중앙으로서 政敎가 펼쳐지는 상징적인 공간이기에 廢主로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대보는 명 태종이 조선의 태종을 조선국왕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고명과 함께 수여된 금인, 즉 조선국왕지인을 말한다. 조선전기에는 명에서 내려준 이 금인을 대보, 국보, 전국보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태조의 즉위 기사, 태종의 전위 기사, 중종의 반정 후 즉위 기사 등을 통해 대보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보에는 통치의 권능과 정당성, 국왕 또는 왕위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대보의 전수를 통해 왕위를 물려주었고, 새로 즉위하는 국왕은 대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대보는 ‘통치권리를 획득한 점과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의 정치적 권력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옥새를 받는 절차가 즉위의례에 포함된 것이다. 옥새는 또한 ‘개개 인간이나 정권보다 오래 견디고 인간의 죽음이나 정치적인 상실 등의 단절을 뛰어넘어서 권력의 이양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傳國璽로 불리는 옥새는 실제 문서행정에 사용되지 않고 권력을 상징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⁸⁰⁾ 그리고 이런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중국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국왕의 인장에 대한 인식, 동시대 명 황제의 즉위례에서도 보이는 옥보의 인수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황제의 옥새 제작 이후 동아시아에서 군주의 璽寶는 그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군주의 즉위식에도 반영되어 한·당·송대의 황제들은 모두 등극하면서 옥새를 물려받았고, 동시대 명에서도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옥보를 받았다. 앞선 시기의 고려에서도 국새를

80) 하워드 웨슬러 저, 임대희 역,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pp.203-206; 『世宗實錄』 卷58, 14년 10월 12일(丁酉) ‘若唐之神璽, 宋之鎮國神寶, 以鎮中國, 藏而不用, 其信璽信寶, 用之於事神發兵等事’

주며 왕위를 전한 사례가 있었고, 사위례 제정을 추진한 세종 자신도 태종으로부터 국보를 받아 즉위한 경험이 있었다. 대보와 그 전수의 상징적 의미를 조선에서도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동의하는 대보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수보 절차가 사위의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고, 그 타당성은 의심받지 않았다. 수보 절차 設行의 당위성은 고제 및 시왕지제와의 일치를 통해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사위에 수보절차를 설정함으로써 통치권 승계의 상징이라는 즉위의례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군주의 새보가 그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에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보로 명에서 사여한 조선국왕지인, 즉 외부에서 유래한 의물을 선택한 것은 제후국 분의 준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후국의 분의는 단순한 힘의 논리에 따른 복속이 아니라 字小事大를 원칙으로 하는 보편질서의 구체였으므로 조선은 자신들이 만든 의례에서 제후국 분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⁸¹⁾ 태종이 명으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책봉받았던 것에 매우 기뻐하였고, 그 사실을 母后神懿王后的 齊陵碑文에 새겼으며⁸²⁾ 태종 자신의 神道碑에도 중요하게 기록되었던 당대의 모습에서,⁸³⁾ 제후국으로서 당당한 한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대 인들은 제후국 조선과 제후왕 조선국왕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었다.

81) 조선전기 예제정비 과정에서 제후국 분의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제천의례의 실행과 관련한 논의였다. 태조대에는 고려로부터의 전통을 이어받아 원단을 원단으로 개칭할 뿐, 제천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太祖實錄』 卷6, 3년 8월 21일(戊子)). 반면 태종대에 들어서는 제천이 제후국의 분의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일어나고 있었고(『太宗實錄』 卷20, 10년 12월 25일(丁巳)), 개별 사안별로 국왕의 결정이 가부와 찬반을 오가고 있었다. 결국 정례적으로 거행되던 제천이 기우를 위한 비정기적인 제천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축소의 움직임을 추동한 원인이 제후로서 제천을 거행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이었다. 의례의 측면에서도 원 간섭기 이래 제후의 위상과 국왕의 위상이 모두 반영되는 조하의례가 거행되었고, 이 양상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명(원)이라는 중주국과 조선(고려)의 관계가 국내적으로도 관철되고 있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었다(최종석, 2009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52).

82) 『太宗實錄』 卷6, 3년 10월 20일(甲子); 卷7, 4년 2월 18일(己丑)

83) 『太宗實錄』 卷36, 18년 11월 8일(甲寅)

동아시아 세계 질서 속에서 제후(왕) 조선국(왕)의 위치를 상징하면서 조선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보는 금으로 제작된 '인'이었다. 중국 역대 왕조의 전국새는 모두 옥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대한제국에서도 황제의 御寶를 옥으로 제작하였다. 명에서도 황제는 옥보를 물려받았고 친왕들은 金寶를 내려받았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옥이라는 재료는 새보의 재질로서 가장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옥으로 자체의 대보를 만드는 대신, 명에서 받은 '금인'을 '대보'라 부르며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물로 이용하였다.

'조선국왕지인'이 새겨진 '금인'에 의식적으로 '보'라는 명칭을 통해 인장 최고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그 금인을 제후왕 조선국왕이 가질 수 있는 최상위의 인장으로 생각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세종대에 명에서 받은 금인을 대보라 칭하면서 이 대보의 예에 따라 금을 사용하여 行寶와 信寶를 새로 주조하였던 것이다.⁸⁴⁾ 조선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왕의 행보와 신보를 제후왕의 인장 재질인 금으로 주조한 것은 이 인장 재질 제한을 조선이 지켜야 할 제후국 분의로서 받아들였음을 말한다. 印에 寶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와 동일한 재질로 행보와 신보를 제작함으로써 조선의 국왕은 명의 친왕급 제후왕이자 조선의 지존이라는 중첩적 위상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5. 사위례를 통한 조선의 天命 전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임의로 전수할 수 없는 면복과 대보를 새 국왕이 착용하고 인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행왕의 의지를 담은 전위유교도 새 국왕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전위유교와 대보, 면복을 통해 대행왕으로부터 새 국왕에게로 전해지는 권위, 정당성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바로 조선이 天命을 받아 건국되었으며 그것이 王統을 따라 계승된다는 인식이 그 한 내용이 될 것이다.⁸⁵⁾ 조선

84) 『世宗實錄』 卷59, 15년 3월 2일(乙卯)

역시 천명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천명 관념을 통해 태조의 즉위와 왕조의 개창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천명은 국왕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배층 일반이 공유하고 있었다. 왕통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천명이었고, 천명을 통해 국왕의 위치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⁸⁶⁾

천명 관념은 주지하듯 商周혁명기에 紂王을 벌하고 주 왕조를 건국한 武王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 형성된 통치의 정당성 측면에서의 천명 관념은 후대에도 큰 변형없이 수용되었고, 각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도구로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다.⁸⁷⁾ 명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천명 관념을 통해 황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명 태조가 각지의 군웅들을 격파하고 吳王에서 황제로 즉위할 때의 의주는 황제 즉위라는 격에 맞게 구성하였는데, 명 태조 자신이 천명을 받은 천자로서 황제에 즉위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절차는 우선 제천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인 圓丘에서 告祭를 지낸 후,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金椅에 앉는다. 이어서 대신들이 명 태조에게 면복을 입힌 후 四拜를 올리고, 玉寶를 받들어 올린다. 백관들이 四拜禮, 叩頭禮, 山呼, 四拜禮를 행하면 황제가 解嚴한다. 황제로 즉위한 후, 太廟로 가서 追尊 四代에게 冊寶를 올리고, 社稷에서 告祭를 지낸다. 황제가 황궁으로 돌아오면 봉천전에서 백관들이 進賀表를 올리고 다시 사배례, 고두례, 舞蹈禮, 산호, 사배례를 행한다. 하례가 끝난 후 황후와 태자를 冊立한 후 즉위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명 태조의 즉위식이 끝난다.⁸⁸⁾

이상은 『大明會典』에 수록된 明太祖 高皇帝 登極儀의 절차로서, 이 즉위 의례를 통해 태조가 천명을 받아 황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 태조는 圓丘에서 告祭를 지낸 후 면복을 입고

85) 『世宗實錄』 五禮의 朝賀儀를 대상으로 조선의 천명을 언급한 연구는 강제훈, 2007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137.

86) 천명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그만큼 다양한 의미와 용례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천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87) 미조구치 유조 외 편, 김석근 외 역,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2011, pp.27-32; 131-135; 317-321

88) 『大明會典』 권45 禮部3 「登極儀」

옥보를 받아 황제가 된다. 이 가운데 원구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즉위하는 것에서 명 태조의 受命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원구는 중국 역대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南郊에 위치하여 祭天을 행하는 곳이었다.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천 그 자체만으로도 황제의 威儀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명 태조는 원구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바로 그곳에서 백관들로 하여금 면복과 어보를 자신에게 바치게 함으로써 천명과 인심을 모두 얻어 황제가 된 것임을 드러내었다. 즉 “天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개국의 즉위의례 전면에 부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⁹⁾ 이렇게 등극의를 통해 황제가 天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명을 받아 개국하였음을 보였다.

황제의 천명을 나타내는 또다른 제도로는 觀象授時를 들 수 있다. 하늘의 아들인 천자라도 칭해지는 황제는 天의 의지를 대행하여 지상의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한 절대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가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데, 하늘의 뜻은 바로 天文을 통해 나타난다. 천문을 통해 曆法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들을 통칭하는 觀象授時는 천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 되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臣屬을 약속한 제후국은 해마다 중주국에서 頒賜하는 曆을 받으며 황제의 年號를 사용하였다. 결국 觀象의 행위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明律』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한다. 『大明律』 卷12 禮律2 儀制 「收藏禁書及私習天文」에서는 私家에서 觀象과 관련한 기물과 천문서, 도참서 및 역대 제왕들의 圖像과 符璽 등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杖 1백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사롭게 천문을 익히는 것도 동일한 죄로서 엄금하고 있다.⁹⁰⁾ 사사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公的으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으로, 공적이라는 것은 곧 황제의 명에 의해 관상을 전담하는 衙門에 배속되어 공무원으로서만 천문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규정들을 통해 관상수시는

89) 박례경, 2011 「덕치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한국실학연구』 21, p.188

90) 『大明律』 권12 禮律2 儀制 「收藏禁書及私習天文」 「凡私家收藏玄象器物天文圖讖應禁之書及歷代帝王圖像 金玉符璽等物者 杖一百。若私習天文者 罪亦如之。」

황제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다. 관상수시와 관련된 이 규정은 『대명률』을 준용한 조선에서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 역시 천명을 받아 건국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태조가 都評議使司의 추대를 받아 고려의 국왕으로 즉위할 때의 기록에 나타난 태조의 언급은 그가 천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백관들이 태조의 私第로 와서 그에게 즉위할 것을 청하면서 軍國의 사무에는 반드시 통솔이 있어야 하므로 즉위하여 神人之望에 부응하라고 하였다. 신료들의 추대를 태조는 거절하면서 帝王이 일어나는 것은 천명이 있어야만 하는데, 자신은 덕이 없는 사람이라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⁹¹⁾ 덕이 없어 천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진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명분을 쌓기 위해 겸양의 덕을 보임으로써 취하는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즉 자신에게 천명이 돌아왔음을 신료들이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태조의 이 말은 천명이 있어야 제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제왕이 된 자신은 천명을 받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며칠 뒤 반포된 즉위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즉위교서에서 하늘이 백성을 낳고 그 가운데에 임금을 세워 기르고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 임금의 도에는 각기 득실이 있어서 人心의 向背와 천명의 去就가 그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태조 자신은 덕이 적어서 君道를 감당할 수 없어 즉위를 사양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뜻은 막을 수 없고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신료들의 말에 어쩔 수없이 즉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⁹²⁾ 君道의 득실에 인심과 천명이 관계되어 있다는 전제에 의해 태조의 易姓革命과 즉위가 정당화된다. 즉 공민왕이 後嗣없이 弑害된 후, 禍와 昌이 모두 辛旽의 자손이고 恭讓왕이 昏暗하여 고려의 君道가 사라졌기에 천명이 고려로부터 떠난 것이다. 천명의 거취를 비추어주는 것이 인심이므로, 神人之望을 받는 태조 자신은 고려 왕실에서 떠난

91) 『太祖實錄』 卷1, 1년 7월 17일(丙申)

92) 『太祖實錄』 卷1, 1년 7월 28일(丁未) ‘天生蒸民，立之君長，養之以相生，治之以相安。故君道有得失，而人心有向背，天命之去就係焉，此理之常也。(중략) 予以涼德，惟不克負荷是懼，讓至再三，僉曰：“人心如此，天意可知。衆不可拒，天不可違。”執之彌固，予俯循輿情，勉即王位’

천명이 머무는 인물이 된다. 인심과 천명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태조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늘의 힘에 의해 즉위한 것이다. 결국 태조는 역성혁명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절대자인 하늘의 명에 의해 즉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교서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受命에 의한 자신의 통치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건국이 천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인식은 이후 각 왕들의 卽位敎書나 禪位敎書에서도 나타난다. 定宗이 태종에게 전위하면서 내린 선위교서에서는 祖宗이 덕을 쌓고 景命을 모아 태조가 나라를 열었는데, 세자(태종)가 천명을 잘 알아 먼저 大義를 主唱하여 鴻業을 세워 開國에 공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⁹³⁾ 조종이 누대에 걸쳐 쌓은 덕은 天命(景命)이 태조에게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이다. 역대의 왕조에서 모두 조상들의 積德을 강조하고 四代를 追尊하여 종묘에 모시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천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祖宗들이 덕을 쌓아 태조에게 이른 천명을 세자가 잘 알았기에 왕조 개창의 선두에 서서 큰 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종의 즉위교서와 세조의 즉위교서에서도 정종의 선위교서와 같은 맥락의 수사가 보이는데,⁹⁴⁾ 바로 ‘태조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東方을 차지하였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처럼 전국에 반포되는 교서에 나타난 천명과 관련된 언급들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와 같이 태조의 즉위와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 또다른 사례로 권근의 「天象列次分野之圖跋」을 볼 수 있다.

이 天文圖의 石刻本은 옛날 平壤城에 있었는데, 兵亂으로 인하여 강에 빠져서 잃어버렸으니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 그 印本의 보존된 것도 또한

93) 『定宗實錄』 卷6, 2년 11월 11일(辛未) ‘恭惟祖宗，仁厚積德，以集景命，逮我神武太上王之肇興也，王世子明柄幾先，灼知天命，首唱大義，以建鴻業，則我朝鮮開國，惟世子之功是多’

94) 『端宗實錄』 卷1, 즉위년 5월 18일(庚戌) ‘恭惟我太祖受天命，撫有大東’； 『世祖實錄』 卷1, 1년 윤6월 11일(乙卯) ‘恭惟我太祖受天命，奄有大東，列聖相承，重熙累洽’

끊어져 없었다. 우리 전하께서 天命을 받은 초기에 印本 한 권을 바친 자가 있었는데, 전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어 書雲觀으로 하여금 돌에 다시 새기도록 명하였다. (후략)⁹⁵⁾

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跋文에서도 조선의 천명이 드러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평양에 있던 天文石刻이 병란을 거치며 사라졌으나, 태조가 조선을 개창한 초기에 어디에선가 천문도의 인본을 바치는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고려의 君道가 사라진 상황에서 神人之望을 받아 즉위한 태조에게 천명을 상징하는 관상수시의 결과물인 천문도를, 그것도 사라져서 세상에 전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다. 前朝 고려시대에 사라졌던 천문도가 조선 건국 직후에 나타났고, 원래 평양에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 더해짐으로써 태조의 천명은 앞선 오랜 역사와 맞닿게 되고 정당화된다. 이를 통해 태조의 왕조 개창은 천명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태조가 천문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자신이 천명을 받은 자로서 하늘을 공경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의 천명이 드러나는 또 다른 지점으로는 국왕들의 廟號와 諡號가 있다. 주지하듯, 조선에서는 反正으로 폐위된 국왕을 제외하면 모든 국왕의 神主를 종묘에 奉安하였고, 그 신주에는 각 국왕의 묘호와 시호가 새겨져 있다.⁹⁶⁾ 원래 祖·宗의 묘호는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⁹⁷⁾ 천자 가운데서도 뛰어난 功德이 있어야만 묘호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묘호의 사용이 시작된 漢代에도 高祖를 제외하면 孝文帝, 孝武帝와 같이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황제만을 대상으로 묘호를 올릴 수 있었다.⁹⁸⁾ 그러나 唐 이후로는 모든 황제들에 대해 묘호를 올리게 되었고, 조선에서 고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당송대의 이러한 전례를 따라

95) 『陽村集』 卷22, 跋語類 「天文圖詩」 ‘右天文圖石本 舊在平壤城 因兵亂沉于江而失之 歲月既久 其印本之存者亦絕無矣 惟我殿下受命之初 有以一本投進者 殿下寶重之 命書雲觀重刻于石’
 96) 조선시대 국왕의 위판 제식에 관해서는 이현진, 2006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題식의 변화」 『震檀學報』 101, pp.228-240 참고.
 97)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p.46
 98) 『世宗實錄』 卷6, 1년 11월 29일(己巳)

조선에서도 묘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⁹⁹⁾ 물론, 이에 앞서 恭靖王(정종)의 묘호와 시호에 관한 논의,¹⁰⁰⁾ 고려 국왕들의 묘호 사용에 대한 『高麗史』 改修 논의¹⁰¹⁾ 등에서와 같이 제후국에서 묘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태조나 태종, 세종과 같은 묘호를 사용할 수 없고 명에서 내려준 諡號(賜諡)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종묘의 신주에는 명에서 내려준 시호와 함께 조선에서 올린 묘호와 시호가 함께 사용되었다.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치를 잊지 않았던 당대인들이 이 묘호와 시호의 사용이 분수에 넘치는 일임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비록 태종의 왕통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세종이 정종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고, 명에서 시호를 내려주고 致祭할 때 사신이 볼 수 없도록 종묘에 묘호를 넣지 않은 임시 신주를 안치하였던 것이다. 이후 선조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묘호 사용을 둘러싸고 명에서 파견한 丁應泰가 조선 조정을 명 조정에 誣告한 것과 그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였던 사건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²⁾

조선에서 이런 원칙을 어기면서도 묘호와 시호를 사용한 것은 조선이 천명을 받아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서는 대행왕의 묘호와 시호를 종묘에서 받아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후가 사망하면 천자가 시호를 내려주고, 천자가 붕어하면 祭天을 행하는 南郊에서 시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⁰³⁾ 시호를 받을 사람보다 상위의 존재로부터 시호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서, 원 간섭기의 고려 국왕들이 元의 賜諡만을 사용한 것은 그 비근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명 황제가

99) 『世宗實錄』 卷53, 13년 8월 6일(戊戌) ‘太祖以上四廟有廟號, 則合於唐宋故事 (후략)’
 100) 『世宗實錄』 卷6, 1년 11월 29일(己巳)
 101) 『世宗實錄』 卷22, 5년 12월 29일(丙子)
 102) 명 사신의 致祭時 假主 설치에 관한 논의 및 정응태의 무고와 관련해서는 임민혁, 2001 「조선시대의 廟號와 事大意識」 『朝鮮時代史學報』 19, pp.162-165 참조
 103) 『文獻通考』 卷89 郊祀考2 ‘天子之諡 當集中書門下御史臺五品以上 尚書四品以上 諸司三品以上 於南郊告天議定 然後連奏以聞’

내려준 시호와 별도로 私諡를 올리고 있었고, 시호를 받아오는 곳이 종묘였다.¹⁰⁴⁾ 천자의 시호와 남교, 조선 국왕의 시호와 종묘가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조선의 종묘는 국왕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천명을 받아 왕조를 개창한 태조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에서 그의 뒤를 이어 조선을 다스렸던 유덕한 後王의 새로운 이름을 받는 절차를 통해 당대인들은 조선의 천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이 천명을 받아 건국되었다는 인식은 일반 신료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신료들이 올리는 글이나 그들의 언급들에서도 이러한 천명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국공신 1등인 趙浚은 자신에게 내려준 평양의 食品과 都統使의 관직을 거두어줄 것을 청하는 箋文을 올렸고, 이 글에서 백관과 臣民이 태조를 추대한 것은 인심과 천명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⁵⁾ 또 세종 즉위 직후 禮曹에서 상왕 태종과 元敬王后에게 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면서 역시 천명과 인심이 태조에게 歸依하였고, 태종은 그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⁶⁾ 제시한 두 사례를 제외하고도 신료들이 태조의 受命을 말하는 기사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태조가 천명을 받아 혁명한다는 것에 국왕뿐만 아니라 신료들도 인식을 함께하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당연한 명제였다.

이상에서의 검토를 통해 조선의 건국이 추존 사대의 공덕과 태조의 천명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조의 개창과 통치의 근거인 천명은 君道가 지켜지는 한 넓게는 왕실, 좁게는 왕위를 승계한 태조의 자손들에게 남아있게 된다. 고려 왕씨의 천명도 공민왕의 사후 3명의 국왕이 昏暗하고 無道한 이후에야 태조에게 옮겨질 수 있었듯, 군도가 사라졌음이 명백해야 천명이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태조의 천명도 후사왕들이 도덕성을 지켜가는

104) 임민혁, 2010 「조선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pp.74-75
이 논문에서는 천자를 대신하여 조상이 시호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05) 『太祖實錄』 卷2, 1년 12월 16일(壬戌) ‘至七月十二日, 天怒民離, 三韓翻然, 推戴殿下. 人心天命, 既至於此, 殿下欲守子臧之節, 其可得乎’

106) 『世宗實錄』 卷1, 즉위년 9월 11일(戊午) ‘前朝之季, 政散民離, 天命人心, 歸我太祖, 時有讒慝, 交構其間, 禍機不測. 惟我上王殿下應時決策, 倡義推戴, 化家爲國’

한 조선의 종묘에 남을 수 있다. 국왕 사후 왕세자의 즉위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듯, 왕위의 세습은 당연한 명제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즉위의례를 통한 유덕자의 왕위 승계 표방은,¹⁰⁷⁾ 소극적이지만 천명이 조선의 왕실에 그대로 머물러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端宗이나 燕山君, 光海君과 같이 지배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국왕들이 反正에 의해 폐위되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국왕의 덕성을 의심받았던 경우가 없었고, 그렇기에 종묘에서 조종을 모실 수 있었다. 결국 천명에 의해 통치자가 결정된다고 믿었던 당대의 인식에 따라 정상적인 군주, 즉 유덕한 군주가 다스리는 경우 천명은 대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

사위례를 통해 유덕한 후계자에게 전해지는 조선의 천명은 면복과 대보를 통해 상징되고 있었다. 앞서 검토한 바에서 볼 수 있었듯, 마면보상을 입고 즉위한 주 강왕의 예를 따라 조선에서 새 국왕이 면복을 입도록 한 것은 繼統이 중한 일임을 보인 것이었다. 왕통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새 국왕이 선왕들의 덕을 본받아 그들로부터 이어져온 천명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명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글을 새겨둔 새보를 따로 만들었던 宋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왕의 대보는 천명을 상징하는 최고의 의물 중 하나였다. 조선에서 제후왕의 직인인 조선국왕지인을 대보라 부르며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였던 것은 대보가 천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천명을 상징하는 대보를 물려받음으로써 조선의 새 국왕은 천명의 담지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천명에 의해 통치권이 부여된다는 인식을 가졌던 전근대시대였기에 대보에 천명을 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행왕은 전위유교를 통해 왕세자에게 왕위를 이어받도록 명하고 있었다. 전위유교와 면복, 대보 그리고 사위례가 결합함으로써 왕세자는 천명을 이어받아 국왕이 된다. 결국 사위례를 통해 조선의 천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조선초기 지배층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천명 인식과 그것이 사위를 통해 전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조는 자신에게 천명이 있는지를 반문하였고, 그 질문은 자신의 즉위를 통해 증명되었다.

107) 김지영, 2012, 앞의 논문

그리고 즉위교서를 통해 천명과 인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공식화하였다. 태조가 받은 천명은 禪位를 통해 정종과 태종, 세종에게 이어졌고 사위를 통해 문종과 단종에게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이 이어갔던 천명은 동아시아의 더 높은 층위와 넓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외부를 향해, 특히 천자국인 명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명을 종주국으로 하는 세계 전체에서 천명은 천자인 명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다. 명에서 頒降한 曆法을 따르고 그 연호를 사용하고 官制를 降格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명 황제의 천명에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론 - 外藩國 조선의 보편 즉위의례, 嗣位

사위는 조선 국왕의 즉위의례를 규정한 것으로 세종대에 마련된 오례 체제에서 흥례의 일부로서 마련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의」의 한 부분으로 마련된 사위는 이후 『국조오례의』 「흥례」의 일부로 여전히 포함되었고 절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었다. 사위를 통해 즉위한 새 국왕은 대행왕으로부터 권위와 정당성을 승계하는데, 이 권위와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이 면복과 대보, 그리고 전위유교이다.

새 국왕이 사위의례 전반에 걸쳐 착용하는 면복은 책봉받은 제후왕만이 용처에 맞게 입을 수 있는 冠服으로 임의로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명에서는 태종을 조선국왕으로 책봉한 뒤 조선의 요청으로 면복을 사여하였는데, 親王에 준하는 九章冕服을 하사하였다. 조선에서는 이 면복을 국왕의 최고등급 예복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사위에서 이 면복의 착용 여부를 두고 긴 시간을 들여 논의하였는데, 이 논의에서 제후국의 분의는 논점이 아니었다. 대행왕의 상례를 맞아 흥복을 입어 슬픔을 드러낼 것인지, 면복을 입어 새 국왕 즉위의 길함을 보일 것인지가 핵심논점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국 麻冕黼裳을 입었던 康王의 사례를 古制로, 十二章

冕服을 입고 즉위한 명 황제의 사례를 時王之制로 이해하여, 양자 모두가 지지하는 방향인 면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면복을 착용하는 것은 주 천자, 명 황제, 그리고 조선의 국왕을 君王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제와 시왕 지체가 일치하는 면복의 착용을 통해 국왕 즉위의 길함을 보이는 사위의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은 명의 제후국이라는 상황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는 명 황제가 내려준 구장면복을 입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전위유교는 왕세자에게 국왕으로의 즉위를 명하는 대행왕의 의지를 담은 교서이다. 전위유교를 통해 왕세자의 덕과 자질을 칭찬하여 宗社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함으로써 그의 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전위유교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위교서나 대비의 교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전위유교의 이러한 역할은 지배자의 후계자 지명이라는 요소를 핵심적인 것으로 한다. 수교절차를 포함시킨 것은 그것이 후계자 지명의 요소를 포함하는, 이상적 형태의 즉위의례인 책명례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계자 지명의 행위를 고제를 모범으로 삼아 설계함으로써 당대인들이 목표로 하였던 보편문물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대보는 전통적으로 통치권력과 정당성을 상징하는 의물이다. 전위유교가 작성되지 못하여 사위에서 수교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대보를 물려받는 수보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었다. 태종의 전위, 반정 뒤 중종 즉위 등의 사례들을 통해 대보가 국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대보의 소유가 국왕의 정당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한 대보는 태종이 조선국왕으로 책봉받으면서 명 태종으로부터 사여받은 조선국왕지인이 새겨진 금인이었다. 사위에서 이 대보를 인수하는 절차를 넣은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보편으로서 국왕의 인장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즉 국왕의 통치권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조선에서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이 인식은 사위의례 안에서 구현되

어야 했는데, 새 국왕의 정당성을 보이는 것이 즉위의례의 본질로서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편의 본질을 달성하는 受寶는 漢 왕조 이래로의 고제이자 명 황제의 등극의인 시왕지제에도 포함된 극히 당연한 절차였다. 조선은 스스로 이 절차를 설계하였는데, 시왕지제로서의 명 황제 등극의는 참고의 대상이 되었다.

면복과 전위유교, 그리고 대보를 통해 조선의 새 국왕에게 이전되는 권위, 정당성은 천명을 그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천명은 상주 혁명기 이후 역대 왕조에서 정권과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관념이었고, 조선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천명은 원래 지상을 주재하는 유일자인 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명의 제후국인 조선은 천명을 주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개국 당시부터 천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지배층 일반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천명은 국왕들의 즉위교서, 신료들의 箋文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위되었고,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자료나 묘호와 같은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은 스스로 천명을 가진 나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천명은 어디까지나 조선 내부적인 담론으로만 기능하고 있었다. 명과의 관계에서는 조선의 천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생각하는 자신들의 천명이었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위는 권위와 정당성을 승계하는 의례로서, 당대의 이상적인 보편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고제와 시왕지제를 참고하면서 동시에 명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에서의 제후국 분의를 투영한 조선의 의례였다. 전위유교를 통해 후계자를 지명하여 대보를 통해 천명을 전수하면서, 명으로부터 사여받은 면복과 대보를 통해 그것이 제후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음을 함께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조선이 스스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이 명의 제후국이지만 그 자체의 천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에 조선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통치의 권위이자 그 원천, 즉 천명은 조선이 만든 사위의례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I. 사료

1. 원문사료

-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 『國朝五禮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본, 1994)
- 『明 太祖高皇帝實錄』 『明 仁宗昭皇帝實錄』
- 『明 宣宗章皇帝實錄』 『明 世宗肅皇帝實錄』
- 『大明會典』 (中國基本古籍庫)
- 『大明律』 (中國基本古籍庫)
- 『通典』 (中國基本古籍庫)
- 『文獻通考』 (中國基本古籍庫)
- 『五禮通考』 (中國基本古籍庫)
- 『說文解字』 (中國基本古籍庫)
- 『高麗史』
- 『陽村集』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練藜室記述』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 번역사료

- 성백효 역주, 『서경집전』 상·하, 전통문화연구회, 2007
- 이기동 역해, 『서경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II. 단행본

- 『왕의 상징, 御寶』, 국립고궁박물관, 2012
- 김지영 외,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5
- 안명숙·김용서, 『한국복식사』, 교문사, 1996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 임계순, 『淸史 :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미조구치 유조 외, 김석근 외 역,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2011
 하워드 웨슬러 저, 임대희 역,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2005, 고즈윈
 Abner Cohen 저, 윤승용 역, 『이차원적 인간 - 복합사회의 권력과 상징의 인류학』, 한빛, 1982
 Allan Barnard 저, 김우영 역,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3
 E.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Princeton Univ. Press, 1957
 Max Weber 저, 임영일 외 역, 『막스 베버 선집』, 까치, 1991
 Ted Lewellen 저, 한경구 외 역, 『정치인류학』, 일조각, 1998

_____, 2010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구조의 특징과 중화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_____,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형주, 2002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 『歷史教育』 89
 _____, 2006 「허조(許稠)와 태종~세종대 국가의례의 정비」 『民族文化研究』 44

III. 논문

강제훈, 2007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137
 _____, 2012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史學研究』 107
 김문식, 2009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김지영, 2012 「조선시대 嗣位儀禮에 대한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61
 김영민, 2013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 이론적 접근」 『韓國史研究』 162
 김혜영, 2010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 55
 노명호, 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韓國史研究』 105
 문중앙, 2006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歷史學報』 189
 _____,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박례경, 2011 「德治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한국실학연구』 21
 이범직, 1989 「국조오례의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歷史學報』 122
 _____, 1990 「조선전기의 五禮와 家禮」 『韓國史研究』 71
 이종은, 2011 「상징과 정치적 권위」 『정치사상연구』 17집 1호
 이현진, 2006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 題式의 변화」 『震檀學報』 101
 임민혁, 2001 「조선시대의 廟號와 事大意識」 『朝鮮時代史學報』 19
 _____, 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역사와 실학』 43
 정다함, 2009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지두환, 1982 「朝鮮初期 朱子家禮의 理解過程」 『韓國史論』 8
 최종석, 2009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Abstract】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ŏn* Dynasty, the reign of King *T'aejong* and *Sejong* in particular, a reorganization of the state system was conducted across the board. It was a process of creating a new order for the brand new kingdom and building a proper system for a princely state of Ming Dynasty. The primary standard of making the new system was so-called the ancient system [古制, *Koje*] which referred the ancient era regarded as ideals and the contemporary system [時王之制, *Siwangjije*] which referred the time under the reign of present kings. The duty of a princely state was a crucial factor as a base of the new system.

The ritual system was renewed as well. *Sawi*, King's enthronement ceremony was completed in the late reign of King *Sejong*. The process of *Sawi* was exemplified in *Myŏnpok*[冕服, mianfu], *Chŏnwiukyo* [傳位遺教, a royal order for the king's succession], and *Taebo* [大寶, the privy seal].

Myŏnpok, mianfu, was the clothes which was given from the Ming emperor and worn in the enthronement ceremony of *Chosŏn*. In the first stage, wearing mianfu or wearing mourning in the enthronement ceremony was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grand court. Finally, mianfu was chosen as a ritual clothes in the ceremony satisfying both the ancient system and the contemporary system. It was because wearing mianfu in enthronement ceremony was a tradition of East Asia through all ages. Moreover, the new king of *Chosŏn* could fulfill his duty as a king of the princely state at the same time.

Chŏnwiukyo, the royal order for the king's succession, legitimated the new king's accession to the throne showing the will of the

former king designating his successor. The handover ceremony of *Chŏnwiukyo* represented the ritual consciousness of an appropriate ceremony at that time. The process of the ceremony was written in the classics, so conducting this ceremony according to the classics was regarded as a realization of ideals.

The privy seal was a symbol of king's authority in the East Asia for a long time. In *Chosŏn*, *Chosŏnkukwangjiin* [朝鮮國王之印] given from the Ming's emperor called *Taebo*, symbolized the power and legitimacy of the king. Also, *Chosŏn* carried out the obligations of a princely state producing king's other seals modeled on the privy seal.

Chosŏn was given its own mandate of heaven from the founder, *Taejo*. It was passed down to the next king via the enthronement ceremony which was designed in the order of the ancient and contemporary system.